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6호

BUDGET AND POLICY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2009. 10. 5

예산분석실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6호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2009. 10. 5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초점을 두어 2009년도 예산 및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연초에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운영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09년 상반기 재정분야의 이슈는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였으며, 실제로 정부는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국회 차원의 보완대책 및 지원조치를 적시에 제안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한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보고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집행현황에 관한 총 11개의 분석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의 조기집행 실적 발표와 달리 실적행률이 저조하여 조기집행 성과가 미흡하고, 2009년도 상반기 이·전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급증 및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파악되었고, 2009년도에 17조원에 달하는 일시차입금을 사용하여 대규모 이자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OC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조기집행을 독려했으나 경쟁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실업급여비의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점 등이 점검되었습니다. 추경에서 신규 도입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중도포기율이 과다한 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융자지원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재정운용 점검은 당해연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의성 있게 짚어본다는 측면에서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안 심사와는 차별화 되는 의의를 가집니다. 이러한 취지로 작성된 동 보고서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2009년도 재정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현안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통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목 차

① 총괄 및 요약.....	1
② 2009년도 조기집행 이행실태 분석	15
③ 상반기 이·전용감액 실태 분석	36
④ 국고금 및 일시차입금의 운용실태 분석	52
⑤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재정운용 점검	60
⑥ 실업급여비 지출 현황과 문제점	74
⑦ 희망근로사업 집행실태 분석	84
⑧ 중소기업 신용보증 현황 및 정책방향	92
⑨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집행동향 및 문제점	97
⑩ SOC 사업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103
⑪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및 문제점	109
⑫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의 급증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123

1 총괄 및 요약

1. 분석 개요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 체제」운영(2009.1.2)에 대응하여, 국회의 재정권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에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을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운영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을 단장으로 45명의 TF를 구성('09.2)하여, '09.1~8월까지 주요 재정사업 집행현장 점검
- 동 점검단은 현장 중심으로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연도 중 점검하여 집행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국회 차원의 보완대책 및 지원조치를 적시성있게 제안하고, 국정감사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

2. 상반기 재정운용 현황

- 2009년 4월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중소기업·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28.5조원 규모(세출 17.3조원 증액, 세입결손 보전 11.2조원)의 추경예산 확정(총 지출 301.8조원)
- 상저하고(上底下高)로 예상되는 금년도 경기흐름을 감안,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 본예산 집행관리대상 257.7조원 중 64.8%인 167.1조원을 상반기에 집행
- 2009년 6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7조 9,550억원 적자
 - 일반회계는 11조 800억원 적자, 특별회계는 18조 5,210억원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비금융성 기금은 2조 7,280억원 흑자 발생
- 2009년 6월말 기준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 제외)는 42조 6,590억원 적자
- 2009년말 국가채무는 365.1조원 수준(GDP대비 35.3%)으로 추정
 - 2009년 추정 366.0조원 대비 0.9조원 감소
 - 2008년 결산 309.0조원 대비 56.1조원 증가
- 중소기업 용자지원, 신용보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
 - 7월말 기준 중소기업 용자사업 집행액은 3조 9,463억원, 추경예산 대비 집행률은 67.4%
 - 7월말까지 신용보증기금에 1조 4,67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4,730억원 정부출연금 지급
 - 전년 말과 대비하여 2009년 7월말까지 신용보증기금은 14조 478억원(연간 목표 대비 61.4%), 기술신용보증기금은 4조 418억원(연간 목표 대비 89.3%)의 보증잔액 증가
- SOC사업은 상반기에 31.1조원을 집행, 계획(26.5조원)대비 117.4% 집행

□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안정 도모

-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7월말까지 5,094억원을 집행하여 2009예산(1조 3,280억원) 대비 38.3% 집행

3. 주요 쟁점

가. 조기집행 실적행를 부진 및 사업선정 부적정

□ 정부는 2005년에도 경기조절 및 연도 말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

- 2009년 상반기 중 본예산 집행관리대상 257.7조원 중 64.8%인 167.1조원을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재정운용에 큰 부담
- 국회 예산통과 시점(2008.12.13)을 감안할 때 연초 재정조기집행 차질 및 무리한 사업추진 우려
-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도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3% 상승하긴 했지만,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0.1%에 그쳤는바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토 필요
-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 정부는 상반기에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적이 107%로(집행관리 대상 예산 257.7조원중 64.8%인 167.1조원을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60.6%(156.1조원)를 4.2%(11조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13개부처 446개 사업 9조 3,4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계획 대비 평균 실집행률이 53.2%에 불과한 등 실집행률 관리 미비
 -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자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집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나,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가 집행한(국고계좌 출금) 금액을 기준으로 조기집행을 관리
- 정부는 경기진작과 일자리 지원 효과 등 파급효과가 큰 4대 중점관리 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하였으나, 그 중 일부사업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연중 고르게 집행되는 법정지출, 저소득층 연탄보조 등 계절성 사업,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전까지 집행을 유보한 사업 등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음

나. 2009년도 상반기 이·전용감액 과다

- 46개 정부부처의 2009년도 상반기 재정운용을 점검한 결과, 2009년 상반기(1월-6월) 이·전용감액 재정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포함)는 1조 3,319억원
 - 이용감액 : 2,571억원, 전용감액 : 1조 747억원
- 일반회계의 2009년도 상반기 이·전용 감액 총액 : 5,469억원
 - 전용감액 : 5,081원, 이용감액 : 388원

- 특히, 전용감액은 주로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나 2009년도의 경우 상반기 전용감액 규모가 2008년도 연간 전용감액 규모 1조 9,821억원의 54.2%에 달하는 등 전용감액이 과다 발생
- 재정규모상 이·전용감액(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제외) 과다부처로는 ① 국토해양부(4,650억원), ② 교육과학기술부(1,750억원), ③ 국방부(472억원),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89억원)
- 10억원 이상 상반기 이·전용 감액 발생사업(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및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제외)은 총 92개 사업, 7,428억원
- 상반기 이·전용감액 사업은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로부터 감액되고 있는바, 정부 스스로도 타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고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상반기 이·전용감액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재정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므로, 향후 국회의 국정감사, 예산안 및 결산 심의시 특별한 관리 필요

다. 국고금의 체계적 관리 미흡

- 2009년 7월말 현재 국고금은 총 166.7조원을 조달하고, 총 175.1조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위해 일시차입금 17조원 발생(연간 이자비용 약 600억원)
 - 월 평균 13.9조원의 수입으로 14.6조원 지출

- 2008년에는 일시차입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2009년에는 총 17조원(7월에 5조원 상환)의 일시차입금을 사용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 중 281억원이 이자상환을 위해 지출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9월말 이후 약 300억원의 이자 추가발생 예상
- 일시차입금은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하므로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이자비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일시차입금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

□ 체계적인 수입과 지출계획 수립 필요

- 국고금 수입과 지출은 매월 계획과 실적이 큰 괴리
- 2009년 2월, 3월, 4월에 수입계획과 실적은 20% 이상의 차이
- 2009년 1월, 3월, 6월, 7월에 지출계획과 실적은 10% 이상의 차이
-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국고금 운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과 실적의 괴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일시차입금의 사용을 줄일 필요

라.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관리 소홀

- 국회예산정책처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지적된 사업 중 2009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136개 사업과 개별사업별 분석 시 집행실적 부진으로 지적된 28개 사업, 총 164개 사업의 집행실적을 점검

-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이 점검대상 사업(164개)의 43.9%인 72개
 - 금융위원회의 ‘금융구조조정 지원’사업은 2008년도 집행률이 9.6%이고,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7,657억원의 16.5%인 1,263억원 집행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은 4년 평균 집행률이 57.2%이고,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1,366억원의 29.6%인 404억원 집행
 - 보건복지가족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사업은 4년 평균 집행률이 25.6%이고,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1,478억원의 29.6%인 438억원 집행

마. 실업급여비 지출 급증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 경기회복 하에서도 고용위기 지속
 -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자수 감소가 현저하고, 공식 실업률이 3.7%(2009.8)로 전년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비 지출 급증
 - 2009년 1~8월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1995년 실업급여 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여 100.5만명에 이르고, 지급액은 2008년 연간 지급액의 99.7%인 2조 8,557억원에 달함
 - 2009년도 실업급여계정 당기수지 적자는 추경당시 전망치(2조 3,764억원)보다는 적지만, 연도말까지 지출액 증가가 수입증가를 상회함으로써 2009년 8월말 현재 당기수지 적자(5,502억원)보다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누적적립금(4조 5,165억원)도 당기수지 적자 증가폭만큼 감소할 것임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급여비 지출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3,976억원)’ 지급 재검토, 실업급여 부정수급 차단 등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총 취업자의 41.1%(979만명)에 불과함에 따라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혜를 받는 사람이 43.6%에 불과
- 취업자 중에서 상당수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58.9%(1,404만명)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2009. 7)
- 경기침체에 민감한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 필요

바. 희망근로 사업 운영의 부적정

- 경제위기하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신규사업으로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1조 7,070억원(국비 1조 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사업 추진
- 사업시행 초기의 중도포기율 과다
 - 지원대상으로 선발한 30만 9,790명 중 7월 말 기준으로 17.7%인 5만 4,846명이 중도에 포기

-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포기자가 전체 중도포기자의 51.1%, 업무형태 불만 및 근무환경 불만으로 인한 중도포기자가 전체 중도포기자의 19.1%

□ 지원대상 중 노령자 및 주부 과다

-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희망근로 지원대상 인원 중 47.4%가 60대 이상, 13.8%가 70대 이상
- 희망근로 지원대상자의 前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부가 22.2%로서 가장 높은 비중
-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의 한시적 생계지원이라는 사업취지와 달리 소위 ‘용돈벌이’ 형태로 성격이 변질될 우려

□ 그 밖에 일부 대상 사업 부적정, 공무원 등에 대한 상품권 구매부담 전가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광주시등 일부 지자체가 사업을 종결함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부당해고 논란 야기

사.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신보) 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 확대를 위해 정부 출연금을 대폭 증액
 - 7월말까지 신보에 1조 4,670억원, 기보에 4,730억원 정부출연금 지급
 - 7월말 현재 보증잔액은 신보 45조 7,862억원, 기보 16조 6,164억원

□ 신용보증의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 7월말 보증사고율은 신보와 기보 모두 4.8%(연간 환산치)로, 당초 전망(신보 9.6%, 기보 11.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중소기업의 대출 변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2010년 이후 대위변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시장기능에 의해 자금유통이 가능한 기업이나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양하는 철저한 보증심사 필요

□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보증정책 필요

-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보증한도 확대, 심사기준 완화, 부분보증비율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향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보증한도·심사기준·부분보증비율 등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신용보증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 특히, 자금중개시장에 존재하는 신용위험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므로 종전의 85% 수준에서 95~100%로 높아진 부분보증비율(대출금액 중 보증금액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필요

아.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의 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 운전자금 비중 과다

-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사업별 운전자금 한도를 높이고 운전자금의 비중도 60% 이상으로 높였음
-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적 및 건강도지수가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비중 재검토 필요

□ 신용대출 및 재무 여건 취약업체에 대한 대출 증가

- 2006~2007년 50% 내외를 보이던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2009년 7월말 현재 79.3%
- 재무여건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F4등급 이하에 대한 지원비율이 2007년 42%, 2008년 43.2%에서 2009년 1~7월 중 59.9%로 크게 증가
- 향후 신용대출 채권 부실로 인한 기금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 필요

자. SOC사업 관련 제도 보완 필요

□ 공사대금의 최종수혜자 전달 독려 필요

- 선금 의무지급률을 확대하였으나(10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금액의 20%→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40%), 선금을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어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심화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강화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필요
- 일부 시공업체는 선금 신청시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추가 부담(선금 보증수수료) 발생을 이유로 선금 수취를 기피하고 있는바, 보증기관의 자율적 보증수수료 인하 유도 필요

□ 긴급입찰제도 활용에 따른 부작용 보완 필요

-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5일간으로 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불충분한 공고로 인한 경쟁제한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찰공고 지면 확대 등 보완조치 필요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완화에 따른 보완조치 필요
 -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우선 교부하도록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개정하였는데,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지방비 미 확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차.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

-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110조원)대비 106.8% 수준인 117.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
- 2009년 상반기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조달 중 채무 의존도 과다(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액이 1조 46억원, 은행 등을 통한 일시차입금이 2조 9,450억원)
- 세입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조절 정책을 위한 적극적 역할보다는 집행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
 - 제주도, 경기도, 전라남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으로 조달
 - 지방채를 통한 자금조달의 급증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미래 재정운용을 경직화시킬 우려
 - 원리금을 금년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일시차입금의 급증은 가용재원을 축소시켜 하반기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우려
- 16개 시·도의 2009년 세출예상액 대비 하반기 지출비중이 36.8%로 재정집행 위축 우려

- 지방세 세수여건 악화, 지방교부세 감액 등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상반기 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재정지출 감소로 조기집행 효과 반감 우려
- 지방재정 지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행사·축제 경비, 민간이전경비 증량비적 경비 절감 필요

카.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 급증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올해 상반기 동안(2009.1~6)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2조 928억원으로, 이미 2008년 지방채 발행규모인 2조 310억원을 초과
- 2009년 7월 31일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채무잔액은 14조 5,494억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해서 1조 2,127억원이 증가
- 2006~2008년 3년 동안 채무잔액이 1조 8,637억원 증가한 반면, 올해 7개월(2009.1~2009.7) 동안에만 채무잔액이 1조 2,127억원 증가
 - 2006~2008년 3년 평균 채무잔액 증가율 7.8%, 7개월(2009.1~2009.7) 채무잔액 증가율 9.1%
-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의 총계예산대비 채무잔액비율은 16.3%,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대비 지방채 발행액 비율은 3.7%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들의 예산대비 채무잔액비율이 20% 수준을 상회
- 지방채를 통한 자금조달의 급증은 지방정부에게 향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

- 하반기에도 중앙정부 추경(세입경정)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고, 지방세 세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계획액 이상으로 발행하여 지방채 채무잔액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② 2009년도 조기집행 이행실태 분석

1. 현 황

가. 예산·기금·공기업¹⁾의 주요사업비²⁾ 집행실적

□ 2009년 6월말까지 정부는 본예산 집행관리대상 257.7조원 중 167.1조원,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 15.1조원 중 4.4조원 등 총 171.5조원을 집행하였음

-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 집행관리 대상 257.7조원 중 167.1조원을 집행하여 연간진도율은 64.8%이며, 상반기 집행계획 60.6%(156.1조원)를 4.2%(11조원) 초과달성하였음
- 기금의 계획대비 집행률은 94.2%로 저조하며, 이로 인해 연간진도율은 58.7%로 예산 65.2%, 공기업 67.1%에 비해 낮음

[표 1] '09년 상반기 본예산 집행실적

(단위: 조원, %)

	'09계획(A)	'09.6월말			연간진도율
		계획(B)	실적(C)	집행률(C/B)	
예 산	170.1	102.5	110.9	108.2	65.2
기 금	30.5	19.0	17.9	94.2	58.7
공기업	57.1	34.6	38.3	110.7	67.1
합 계	257.7	156.1	167.1	107.0	64.8

자료: 기획재정부.

1) 예산 40개, 기금 39개 및 공기업 25개.

2) 인건비, 경상경비 및 정부내부거래 등 제외.

나. 4대 중점관리분야 사업 집행실적

- 기획재정부는 조기집행대상 주요사업비 257.7조원 중 경기진작효과가 크거나 국민경제와 밀접한 4대 중점관리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였는데, 이들 사업은 52.9조원을 집행하여 연간진도율이 70.6%이며, 상반기 집행목표 63.8%를 6.8%(5.1조원) 초과달성하였음
- SOC 사업이 계획대비 가장 높은 117.4%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일자리사업이 103.2%, 민생안정사업이 102.8%, 금융시장사업이 100.0%의 집행률을 보였음
 - 연간진도율은 금융시장사업이 가장 높은 100.0%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SOC사업이 72.5%, 일자리사업이 71.1%, 민생안정사업이 가장 낮은 62.4%를 보였음

[표 2] '09년 상반기 4대 중점관리분야 집행실적

(단위: 조원, %)

	'09계획(A)	'09.6월말			연간진도율
		계획(B)	실적(C)	집행률(C/B)	
일자리사업	4.5	3.1	3.2	103.2	71.1
민생안정사업	23.7	14.4	14.8	102.8	62.4
금융시장사업	3.8	3.8	3.8	100.0	100.0
SOC사업	42.9	31.1	31.1	117.4	72.5
합 계	74.9	47.8	52.9	110.7	70.6

자료: 기획재정부.

다. 통합재정수지³⁾ 및 국가채무 현황

□ 2009년 6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7조 9,550억원 적자임

- 수입은 총 133조 2,37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87조 7,65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 3,840억원, 비금융성 기금에서 36조 7,830억원 등이 발생
- 지출 및 순융자는 총 161조 1,93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8조 8,450억원, 특별회계에서 25조 9,050억원, 비금융성 기금에서 34조 540억원 등이 발생
- 일반회계는 11조 800억원 적자, 특별회계는 18조 5,210억원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비금융성 기금은 2조 7,280억원 흑자 발생

[표 3] '09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현황(누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외	기업 특별회계	비금융성 기 금	합 계
수 입 (A)	87,765	7,384	1	1,305	36,783	133,237
경상수입 ¹⁾	87,151	6,781	1	1,292	36,313	131,538
자본수입 ²⁾	614	603	0	13	470	1,700
지출 및 순융자 (B)	98,845	25,905	316	2,073	34,054	161,193
경상지출 ³⁾	85,660	8,245	316	1,843	27,507	123,570
자본지출 ⁴⁾	9,982	16,461	0	230	1,375	28,048
순융자 ⁵⁾	3,204	1,198	0	0	5,173	9,575
통합재정수지 (A-B)	△11,080	△18,521	△314	△768	2,728	△27,955

주: 1. 1) 경상수입 :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세외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수수료, 벌금 및 몰수금, 공무원연금기여금 등).

2) 자본수입 : 고정·재고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수입등.

3) 경상지출 : 인건비, 임차료, 이차지급, 보조금 및 지방정부 등에 대한 경상이전.

4) 자본지출 : 고정·재고자산 매입비, 지방정부 등에 대한 자본이전.

5)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2.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3)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는 기획재정부 잠정치임.

□ 2009년 6월말 기준 관리대상수지는 42조 6,590억원 적자임

-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⁴⁾의 흑자분을 제외하여 산출
- $\Delta 27$ 조 9,550억원(통합재정수지) - 14조 7,040억원(사회보장성기금 흑자) = $\Delta 42$ 조 6,590억원

□ 2009년 말 국가채무는 365.1조원 수준(GDP 대비 35.3%)으로 추정

- 2009년 추경 366.0조원 대비 0.9조원 감소
 -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평채와 해외차입금 잔액이 감소한데에 주로 기인
- 2008년 결산 309.0조원 대비 56.1조원 증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 증대에 주로 기인

[표 4] 2009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 추정액

(단위: 조원, %)

	'08년 결산(A)	'09년 추경(B)	'09년말 전망			전년대비 (C-A)	추경대비 (C-B)
			차입	상환	잔액		
총 계 (GDP 대비)	309.0 (30.2)	366.0 (35.6)	-	-	365.1 (35.3)	56.1 (5.1%p)	$\Delta 0.9$ ($\Delta 0.3$ %p)
○ 중앙정부	297.9	355.3	114.4	59.1	353.2	55.3	$\Delta 2.1$
-국채	289.4	345.4	108.2	53.7	343.9	54.5	$\Delta 1.5$
-차입금	5.3	6.5	3.5	3.2	5.6	0.3	$\Delta 0.9$
-국고채무 부담행위	3.2	3.4	2.7	2.2	3.7	0.5	0.3
○ 지방정부 순채무	11.0	10.7	-	-	11.9	0.9	1.2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계획」, 2009. 10

4) 사회보장성기금 (4개)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 주요 쟁점

가. 재정조기집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 정부는 2005년에도 집행시기 조절을 통한 경기조절 및 연도 말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현시점에서 동일하게 제기할 수 있음
-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예산부족 문제
 - 재정조기집행은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집중(2009년 상반기 중 본예산 집행관리 대상 257.7조원 중 64.8%인 167.1조원을 집행)하는 것이나, 하반기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무리한 사업추진 문제
 - 정부는 상반기 집행계획을 4.2% 초과달성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연중 고르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업이나, 계절성 사업을 조기집행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조기집행 대상을 무리하게 선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집행 실적이 집행실적보다 저조한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조기집행 실적이 일부 과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조기집행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문제
 -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실제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도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3% 상승하긴 했지만,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0.1%에 그쳤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2009년 9월에 발표한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4분기 중 국내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은 수입 급감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 일자리 창출효과 문제

-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중 노령자와 주부가 지나치게 많고(60 대 이상이 47.4%, 주부가 22.2%), 중도포기자가 많으며(7월 말 기준으로 17.7%인 5만 4,846명이 중도에 포기), 기존 공공근로와 유사한 단순 취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적 사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표 5] 2005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논점

문제제기	정부입장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예산부족과 이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전망이며, 종합투자계획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 재정긴축 가능성이 낮음
지난해 말 국회 예산통과 지연에 따른 연초 재정 조기집행 차질 및 무리한 사업추진 우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사업계획 수립 등 연초 집행 소요기간 단축 준비. 지난해 실적 감안할 때 달성 불가능한 수준 아님
예산을 앞당겨 써도 경제성장률 크게 높아지기 힘들 것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 및 상·하반기 경기진폭 완화 기대.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성장률 0.3%포인트 상승효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대 효과 크지 않을 가능성	위축된 민간 고용창출 능력 보완 및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

자료: 서울신문 2005. 1. 13.

나. 조기집행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 부적정

- 정부는 경기진작과 일자리 지원 효과 등 파급효과가 큰 4대 중점관리 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하였으나, 그 중 일부 사업은 국제회의 참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내경기 진작과 거리가 있거나, 연중 고르게 균형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조기집행이 불가한 사업이었음
 - 여성부의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사업’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성들이 하계·동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인턴쉽 및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경기진작과는 거리가 있으며,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기집행대상으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과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사업’은 인건비성 사업으로서 월별로 자금이 집행됨에 따라 조기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연탄보조 사업’은 연탄사용 저소득층에 대해 연탄가격인상분만큼 연탄을 무료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예산은 대부분 2009~2010년의 동절기에 집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50억원 전액 미집행 상태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폐업지원 사업’과 ‘신선편이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9년 예산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하도록 하였으므로 조기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액 미집행되었음

[표 6] 중점관리대상 선정 부적정 사례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	2009예산 (추경기준)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선정 부적정 사유	
			계획	실집행실적	실집행률		
농림수산 식품부	폐업지원	50,000	15,000	0	0	FTA 비준 전까지 집행유보된 사업임	
	신선편이 가공시설 현대화	11,000	5,000	0	0		
	재해대책비	30,000	18,000	1,412	7.8		
	재해대책비 (응자)	20,000	12,000	6,219	51.8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 집행되는 것으로 사전에 집행이 어려움
	(자)재해 대책비	10,000	6,000	3,108	51.8		
문화체육 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6,795	5,484	2,700	49	인건비성 사업으로 서, 월별로 일정액이 지출되므로, 일괄집 행이 어려움	
	문화예술기관 인터넷도 활성화	3,156	2,486	878	35		
지식 경제부	저소득층 연탄보조	15,000	0	0	0	연탄 무료지원은 대 부분 동절기에 이루 어지는바, 2009년 예 산은 2009~2010년 동절 기에 집행될 예정임	
여성부	국제전문 여성인력양성	372	105	118	112.4	해외 인턴쉽 및 국 제회의 참가를 지원 하는 사업이며, 대부 분 방학 중에 집행 이 이루어짐	
특허청	모태 조합 출자	60,000	45,000	30,000	66.7	책임운영기관 특별회 계 사업으로서, 특허 료 등의 수수료 수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 산이 집행됨	
문화재청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2,324	2,324	736	32	인건비성 사업으로 서 월별로 일정액이 지출되므로, 일괄집 행이 어려움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2,925	2,925	923	32		
보건복지 가족부	생계급여	2,519,251	1,904,690	1,153,458	60.5	월별로 일정액이 집 행되는 법정지출임	
	주거급여	673,942	458,416	287,575	62.7		

자료: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나. 실집행률 관리 미흡

- 정부는 중앙부처가 집행한(국고계좌 출금) 금액을 기준으로 조기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 국고보조금이나 출연·출자금 등은 중앙부처의 집행실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수요자에 대한 집행실적, 즉 실집행실적은 중앙부처의 집행실적보다 미흡한 경우가 많음
 - 산림청의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사업은 산림청이 지자체에 교부한 집행실적은 168억 7,800만원으로서 당초 계획대비 128.3%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자체가 실제로 집행한 실적은 행정절차 지연 및 소액사업 분리발주 등의 이유로 86억 4,800만원이 집행되어 당초 계획 대비 65.7%에 불과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부처가 집행한 금액은 209억 200만원으로서 집행률이 126.5%였으나, 보조사업자인 지자체가 민간에 선금 지급 없이 기성금 정산방식으로 집행함에 따라 실집행된 금액은 102억 3,400만원으로서 실집행률이 당초 계획대비 61.9%에 불과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계약학과 운영대학과 세부 협약이 미체결됨에 따라 실집행액은 3,300만원으로서 당초 계획 대비 2%에 불과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부처의 집행금액은 42억 800만원으로서 당초 계획의 72%를 집행하였으나, 지자체가 지방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실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의 34%인 19억 8,000만원에 불과하였음
 - 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의 99.6%인 2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대구광역시 가창댐상수원보호구역 및 충남 금산군 추부상수원보호구역 등 일부 주민지원사업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실집행액은 당초 계획의 64.6%인 17억 2,800만원에 불과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특화품목육성’ 사업은 상반기에 지자체에 800억원을 교부함으로써 당초 계획을 100% 달성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실집행액은 당초 계획의 68.2%인 545억 8,7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사업’은 중앙부처는 예산의 99.3%를 교부하였으나, 지자체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36.1%에 불과하였음
- 13개 부처 446개 사업(9조 3,450억원)이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실집행률 70% 이하
- 이들 사업의 계획 대비 평균 실집행률은 53.2%, 연간 진도율은 35.5%
 - 지식경제부는 실집행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중앙부처의 집행실적이 높다 하더라도, 자금이 최종수요자에게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어려워지는 것이므로, 집행률을 기준으로 조기집행의 성과를 말하기는 어려움
- 현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연계가 미흡하고,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명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어 실집행률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바, 향후에는 사업명을 코드화하여 최종수요자에 대한 집행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집행실적 기준의 재정운용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7] 부처별 실적집행실적 부진 사례(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실적집행을 70% 이하)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B)	집행 실적(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문화 재청	목조문화재상시감시체제구축	2,324	2,324	2,324	736	100.0	32.0	32.0
	문화재특별관리비지원	2,925	2,925	2,925	923	100.0	32.0	32.0
문화 체육 관광부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	6,795	5,484	5,898	2,700	108.0	49.0	40.0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양성	2,000	2,000	2,000	33	100.0	2.0	2.0
	뉴미디어비즈니스쿨	2,600	2,577	2,581	848	100.0	33.0	33.0
	디자인문화전문인력양성	525	265	265	172	100.0	65.0	33.0
	문화예술기관인턴제도활성화	3,156	2,486	2,589	878	104.0	35.0	28.0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4,180	2,750	2,750	1,324	100.0	48.0	32.0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6,000	4,520	3,666	2,556	81.0	57.0	43.0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	25,490	21,965	19,285	13,170	88.0	60.0	52.0
	자유이용저작물공유및이용활성화	2,288	2,288	2,288	1,047	100.0	46.0	46.0
	예술창작활동지원	5,341	3,462	1,186	1,186	34.0	34.0	22.0
특허청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1,460	1,000	960	277	96.0	28.0	19.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5,850	5,850	4,208	1,980	72.0	34.0	34.0
행복청	모태조합출자	60,000	45,000	30,000	30,000	66.7	66.7	50.0
	중앙행정기관	121,863	62,438	40,180	40,180	64.4	64.4	33.0
	국가시설건립	2,083	1,036	-	-	-	-	-
여성부	행정도시운영	2,394	1,764	1,027	1,027	58.0	58.0	43.0
	지방행정정보시스템구축	1,000	500	108	108	22.0	22.0	10.8
농림 수산 식품부	여성다시일하기센터지정운영	13,918	5,807	3,286	3,134	56.6	54.0	22.5
	재해대책비	60,000	36,000	17,631	12,364	49.0	34.3	20.6
	(자)농기계임대사업	20,000	20,000	20,000	12,703	100.0	63.5	63.5
	(경)농어업경영권설립	5,520	5,520	5,520	1,672	100.0	30.3	30.3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500	1,250	200	80	16.0	6.4	3.2
	(경)농업인교육훈련	16,548	14,548	9,942	3,002	68.3	20.6	18.1
	(경)연근해어선감척	129,800	90,950	4,365	850	4.8	0.9	0.7
	(경)영유아양육지원	40,648	30,486	30,486	17,969	100.0	58.9	44.2
	(경)폐비닐수거비지원	2,679	2,679	2,679	1,221	100.0	45.6	45.6
	농식품시설현대화(옹자)	70,000	40,400	5,678	5,678	14.1	14.1	8.1
	(경)폐업지원	50,000	15,000	-	-	-	-	-
	어촌어항관광개발	8,534	4,180	8,214	2,871	196.5	68.7	33.6
	어촌종합개발	17,182	10,500	11,696	6,756	111.4	64.3	39.3
	(자)농공단지조성	59,798	40,000	40,000	20,543	100.0	51.4	34.4
	(경)창업후계농어업인육성	1,399	840	837	499	99.6	59.4	35.7
	(자)천일염산업 육성지원	1,440	1,440	1,440	720	100.0	50.0	50.0
	(자)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2,000	400	400	155	100.0	38.8	7.8
	(자)김치HACCP가공공장건립	1,500	1,500	1,500	32	100.0	2.1	2.1
	(경자)신활력지역지원	188,219	130,000	130,000	81,109	100.0	62.4	43.1
	특화품목육성사업	127,261	80,000	80,000	54,587	100.0	68.2	42.9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	25,700	20,655	20,071	12,180	97.2	59.0	47.4	
해의농업개발	24,000	14,750	-	-	-	-	-	
전통발효식품육성	5,400	2,599	953	709	36.7	27.3	13.1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 (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 (B)	집행 실적 (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한식세계화지원(용자)	2,000	1,000	-	-	-	-	-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22,000	20,000	19,868	7,213	99.3	36.1	32.8
노동부	신규실업자직업훈련	129,111	68,961	42,632	42,632	61.8	61.8	33.0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	12,395	5,243	1,215	1,215	23.2	23.2	9.8
	취업애로계층직업진로개발지원	56	28	16	16	57.1	57.1	28.6
산림청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20,031	13,155	16,878	8,648	128.3	65.7	43.2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16,068	10,444	9,175	4,721	87.8	45.2	29.4
	산촌생태마을조성	25,420	16,523	20,902	10,234	126.5	61.9	40.3
보건 복지 가족부	산모신생아도움미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	25,684	15,410	21,348	9,458	138.5	61.4	36.8
	아이돌보미지원사업(보조)	22,398	10,851	10,851	7,070	100.0	65.2	31.6
	임상의과학연구차양성	1,250	1,250	559	559	44.7	44.7	44.7
	장애인사회활동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	113,059	73,239	88,086	45,228	120.3	61.8	40.0
	결혼이민자가족지원	3,065	2,402	1,569	1,569	65.3	65.3	51.1
	생계급여	2,519,251	1,904,690	1,554,314	1,153,458	81.6	60.5	45.7
	주거급여	673,942	458,416	392,928	287,575	85.7	62.7	42.7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3,334	2,283	2,373	1,319	103.9	57.8	39.6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33,000	9,100	8,264	5,590	90.8	61.4	16.9
	부랑인시설기능보강	3,501	2,175	3,414	1,430	157.0	65.7	40.8
	노인일자리전담기관지원	8,911	4,456	3,907	2,637	87.7	59.2	29.6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기타의료급여부담금)	101,762	101,762	50,085	50,085	49.2	49.2	49.2
	노인요양시설확충	97,390	57,929	69,631	40,363	120.2	69.7	41.4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보조)	135,600	81,360	81,360	54,323	100.0	66.8	40.1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보조)	49,040	29,424	29,424	12,401	100.0	42.1	25.3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보조)	83,942	50,365	50,365	31,435	100.0	62.4	37.4
	장애인차량PG세금인상분지원	110,500	55,250	35,519	35,519	64.3	64.3	32.1
	재활병원건립	11,000	11,000	11,000	438	100.0	4.0	4.0
	국가예방접종실시지자체보조	33,561	33,561	24,077	11,554	71.7	34.4	34.4
	국가결핵예방	9,883	8,022	8,633	1,721	107.6	21.5	17.4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15,000	11,000	10,000	5,835	90.9	53.0	38.9
행정 안전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91,000	91,000	91,000	59,976	100.0	65.9	65.9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2,674	2,674	2,663	1,728	99.6	64.6	64.6
국토 해양부	국제공동 연구사업(R&D)	1,620	1,620	1,620	1,018	100	62.8	62.8
	극지연구인프라구축(R&D)	3,000	3,000	3,000	134	100	4.5	4.5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개발(R&D)	6,414	5,164	6,414	2,300	124.2	44.5	35.9
	물류시스템개선 기술개발(R&D)	3,000	0	0	0	0	0	0
	미래해양 기술개발(R&D)	3,500	3,500	3,500	157	100	4.5	4.5
	연구기획평가(R&D)	800	800	800	36	100	4.5	4.5
	중립해양과학조사선 건조(R&D)	30,300	30,300	30,300	1,212	100	4	4
지역R&D역량강화(R&D)	4,500	4,500	4,500	1,730	100	38.4	38.4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 (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 (B)	집행 실적 (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R&D)	4,700	1,500	1,500	211	100	14.1	4.5
	항공선진화사업(R&D)	29,508	29,508	29,508	17,024	100	57.7	57.7
	항공우주센터 건립사업(R&D)	10,000	10,000	517	17	5.2	0.2	0.2
	해상교통기반시설기술개발(R&D)	3,000	3,000	3,000	134	100	4.5	4.5
	해양과학 조사연구(R&D)	7,900	7,900	7,900	2,981	100	37.7	37.7
	해양관측조사 인프라구축(R&D)	43,486	43,486	43,486	5,319	100	12.2	12.2
	해양광물자원탐사 및 이용기술개발 (R&D)	14,510	14,510	12,510	7,595	86.2	52.3	52.3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R&D)	15,019	15,019	15,019	10,519	100	70	70
	해양수자원이용기술개발(R&D)	1,700	1,700	1,700	888	100	52.2	52.2
	해양안전 기술개발(R&D)	2,100	2,100	2,100	190	100	9	9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R&D)	5,800	5,800	5,800	2,252	100	38.8	38.8
	해양장비기술개발(R&D)	4,900	4,900	4,900	2,416	100	49.3	49.3
	해양중소벤처지원사업(R&D)	2,000	2,000	2,000	90	100	4.5	4.5
	해양환경개선기술개발(R&D)	3,700	3,700	3,700	1,360	100	36.8	36.8
	해양환경보전기술개발(R&D)	3,450	2,243	3,450	274	153.8	12.2	7.9
	해양환경복원기술개발(R&D)	3,500	3,500	3,377	1,584	96.5	45.3	45.3
	가락-도계국지도건설	6,100	3,660	4,000	1,192	109.3	32.6	19.5
	가흥-상망국대도건설	8,593	5,156	505	505	9.8	9.8	5.9
	감포-구룡포 국도건설	1,000	313	188	188	60.2	60.2	18.8
	경주-연양고속도로건설	900	0	0	0	0	0	0
	계곡-신덕국지도건설	5,000	3,000	1,500	0	50	0	0
	계백로우회도로건설	5,000	0	1,541	1,541	0	0	30.8
	고군산 연결도로건설	32,497	10,172	593	593	5.8	5.8	1.8
	고노-우보 국도건설	1,000	313	0	0	0	0	0
	고령-성주3지역간선5차건설	4,100	2,460	0	0	0	0	0
	고속도로접도구역매수	300	300	0	0	0	0	0
	고양화전-신사광역도로건설	4,700	4,230	2,956	2,018	69.9	47.7	42.9
	고제-무풍국도건설	8,365	2,618	251	251	9.6	9.6	3
	고현-이동국도건설	5,000	1,565	0	0	0	0	0
	고현-하동IC 국도건설	2,000	626	0	0	0	0	0
	공장입지유도지구진입도로	1,000	0	0	0	0	0	0
	관산-벽제국대도건설	1,318	791	0	0	0	0	0
	관산-원당국대도건설	18,437	5,531	1,000	1,000	18.1	18.1	5.4
	교하-문산국지도건설	8,000	4,800	5,000	2,693	104.2	56.1	33.7
	구국도시설개량	408	408	408	74	100	18.1	18.1
	구국도유지보수	9,756	9,756	9,756	5,159	100	52.9	52.9
	구미국가산단진입도로	2,000	400	0	0	0	0	0
	구이-이서국대도건설	1,447	434	161	161	37.1	37.1	11.1
	구포-덕산국대도건설	1,000	600	0	0	0	0	0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	11,500	6,900	4,392	4,392	63.6	63.6	38.2
	국도46호선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3,422	0	2,477	2,477	0	0	72.4
	국도선보상	8,000	2,504	0	0	0	0	0
	국도시설안전개선	2,901	2,901	2,901	1,491	100	51.4	51.4
	국유재산실태조사	375	375	53	53	14.2	14.2	14.2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 (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 (B)	집행 실적 (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군내-고군지역간선5차건설	8,000	4,800	1,365	1,365	28.4	28.4	17.1
	군장(군산3)산단진입도로	11,199	7,671	5,266	5,266	68.6	68.6	47
	기업도시기반시설지원	3,000	700	700	249	100	35.6	8.3
	김포양촌산단진입도로	3,060	50	0	0	0	0	0
	김해산단진입도로	832	0	509	509	0	0	61.1
	나전-진부 국도건설	1,500	470	0	0	0	0	0
	나전-소라 국지도건설	2,000	1,200	500	31	41.7	2.6	1.6
	남면-북면국대도건설	18,000	0	13,503	12,727	0	0	70.7
	남산-동산국지도건설	3,014	1,808	1,000	1,000	55.3	55.3	33.2
	내서-철원 국도건설	1,500	470	250	250	53.2	53.2	16.7
	녹산-생곡국지도건설	948	569	500	86	87.9	15.1	9.1
	다인-비안 국도건설	3,668	1,148	0	0	0	0	0
	단양신소재산단진입도로	574	0	369	369	0	0	64.3
	단양IC-대강국도건설	1,506	471	34	34	7.2	7.2	2.3
	대덕석봉-충북도계 국지도 건설	3,945	2,367	1,000	1,000	42.2	42.2	25.3
	대전-당진고속도로건설	124,300	0	81,000	81,000	0	0	65.2
	대전별곡길 광역도로건설	3,000	0	0	0	0	0	0
	덕양-용미국지도건설	3,000	1,800	1,000	1,000	55.6	55.6	33.3
	도계-횡성 국도건설	1,342	420	0	0	0	0	0
	도청신도시진입도로건설지원	5,000	0	0	0	0	0	0
	동대구-경주고속도로건설	900	0	0	0	0	0	0
	등읍-봉강 국지도건설	2,400	1,440	500	500	34.7	34.7	20.8
	마리-송정국도건설	20,351	12,742	7,240	7,240	56.8	56.8	35.6
	만리포-태안국도건설	1,500	470	0	0	0	0	0
	문흥-보춘 국도건설	500	157	0	0	0	0	0
	미로-미로1 국도건설	1,500	470	0	0	0	0	0
	미포국가산단2진입도로	2,000	50	0	0	0	0	0
	밀양역-삼량 국도건설	1,000	313	130	130	41.5	41.5	13
	방산-하중국대도건설(보조)	18,500	0	13,000	13,000	0	0	70.3
	배방-탕정물류간선1차건설	11,000	6,600	3,456	3,456	52.4	52.4	31.4
	백안-와촌광역도로건설	2,952	0	2,952	1,826	0	0	61.9
	별교-주암2국도건설	18,361	11,496	5,039	5,039	43.8	43.8	27.4
	보은-내북지역간선3차건설	13,000	7,800	5,407	5,407	69.3	69.3	41.6
	분오-오목천(2)국지도건설	5,100	3,060	0	0	0	0	0
	봉산-장양국대도건설	15,850	0	9,257	9,257	0	0	58.4
	부산시계-웅상국도건설	668	209	0	0	0	0	0
	부여규암우회도로건설	1,000	626	0	0	0	0	0
	부원동-가락광역도로건설	1,038	0	1,038	1,038	0	0	100
	사가정-암사광역도로건설	29,000	29,000	29,000	19,225	100	66.3	66.3
	삼산-금봉국대도건설	13,299	3,990	2,687	2,687	67.3	67.3	20.2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	58,500	0	0	0	0	0	0
	상패-청산국대도건설	829	497	0	0	0	0	0
	생림-상동국지도건설	2,500	1,500	1,000	860	66.7	57.3	34.4
	서면-근남지역간선5차건설	30,000	18,000	0	0	0	0	0
	서운동-삼정동광역도로건설	3,250	3,250	3,250	1,213	100	37.3	37.3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B)	집행 실적(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전산 운영경비	19	13	3	3	20.3	20.3	13.9
	서울지하철9호선건설	30,818	30,818	19,600	4,767	63.6	15.5	15.5
	서천-보령(1) 국도건설	668	209	0	0	0	0	0
	서천-보령(2) 국도건설	3,000	939	0	0	0	0	0
	서천-보령(3) 국도건설	3,000	939	0	0	0	0	0
	석문-가곡국도건설	3,340	1,045	140	140	13.4	13.4	4.2
	석문국가산단진입도로	3,060	0	0	0	0	0	0
	선박운송안전확보	880	520	93	93	17.9	17.9	10.6
	성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506	0	0	0	0	0	0
	성송-고창 국도건설	2,000	626	0	0	0	0	0
	성연-운산 국지도건설	1,000	600	0	0	0	0	0
	소정-배방2국대도건설	7,095	4,257	190	190	4.5	4.5	2.7
	소천-서면지역간선5차건설	50,000	30,000	7,023	7,023	23.4	23.4	14
	송현-남령국지도건설	9,000	5,400	5,000	1,725	92.6	31.9	19.2
	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 진입도로	1,000	0	0	0	0	0	0
	순천승주우회도로건설	3,000	939	0	0	0	0	0
	신갈-호법고속도로건설	58,800	45,300	30,000	30,000	66.2	66.2	51
	신내-퇴계원광역도로건설	9,316	8,384	9,316	4,862	111.1	58	52.2
	신나-노은국지도건설	1,930	1,158	0	0	0	0	0
	신덕-임실국지도건설	200	120	0	0	0	0	0
	신동-문곡1지역간선1차건설	1,890	1,134	0	0	0	0	0
	신동-문곡2지역간선1차건설	1,323	794	0	0	0	0	0
	신지-대금 국도건설	836	262	0	0	0	0	0
	신창-대정구국도건설	22,041	13,225	13,200	9,142	99.8	69.1	41.5
	아주-상동물류간선1차건설	23,368	14,021	8,794	8,794	62.7	62.7	37.6
	압해-암태국도건설	16,684	5,222	0	0	0	0	0
	양곡-완암물류간선1차건설	25,000	15,000	9,100	9,100	60.7	60.7	36.4
	양평-여주국도건설	5,666	1,773	306	306	17.2	17.2	5.4
	연동-아라2구국대도건설	1,000	600	798	0	133	0	0
	영광-해제국도건설	500	157	0	0	0	0	0
	영동-용산 국도건설	3,000	939	348	348	37	37	11.6
	영산강강변도로	6,000	3,900	2,878	1,320	73.8	33.8	22
	영인-청북(1) 국도건설	1,666	521	0	0	0	0	0
	영인-청북(2) 국도건설	1,166	365	79	79	21.6	21.6	6.8
	영중-전곡 국도건설	2,177	681	106	106	15.5	15.5	4.9
	옥성-선산국지도건설	7,900	4,740	4,000	2,155	84.4	45.5	27.3
	외석재터널국지도건설	3,000	1,800	1,000	1,000	55.6	55.6	33.3
	왕산-성산국도건설	836	262	84	84	31.9	31.9	10
	왜관-가산 국지도건설	3,800	2,280	0	10	0	0.4	0.3
	용두-동면 국도건설	1,000	313	62	62	19.9	19.9	6.2
	우정-장안국도건설	3,490	2,185	0	0	0	0	0
	울산-포항고속도로건설	36,000	0	0	0	0	0	0
	원당-태리 광역도로건설	3,000	1,580	0	0	0	0	0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B)	집행 실적(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원주-강릉 철도건설	20,000	10,000	145	145	1.4	1.5	0.7
	원청-태안(1) 국도건설	3,166	991	0	0	0	0	0
	원청-태안(2) 국도건설	1,166	365	0	0	0	0	0
	월전-세종국대도건설	26,113	0	11,309	11,309	0	0	43.3
	위림-명지국지도건설	124	74	0	0	0	0	0
	음성-호법고속도로건설	1,800	0	0	0	0	0	0
	의령-전국 국도건설	2,000	626	0	0	0	0	0
	이천-홍천국지도건설	7,000	4,200	0	0	0	0	0
	인천서구-김포광역도로건설	2,500	2,500	0	0	0	0	0
	인포-보은 국도건설	1,000	313	23	23	7.3	7.3	2.3
	일로-몽탄국지도건설	700	420	0	0	0	0	0
	일패-외부국지도건설	1,000	600	0	0	0	0	0
	자금-회천국대도건설	18,711	0	12,101	12,101	0	0	64.7
	장승포-장목민자접속도로	94,010	94,010	94,010	65,623	100	69.8	69.8
	장안-온산국도건설	668	209	0	0	0	0	0
	정읍-태인2 국도건설	1,000	313	0	0	0	0	0
	조라-법원국지도건설	3,000	1,800	1,000	1,000	55.6	55.6	33.3
	조치원전의산단진입도로	16,910	11,787	7,447	7,447	63.2	63.2	44
	중화-둔덕국대도건설(보조)	17,000	0	13,000	13,000	0	0	76.5
	준산업단지진입도로	900	0	0	0	0	0	0
	중군-진정 국대도건설	1,000	600	0	0	0	0	0
	지역간선국도1차건설지원	27,754	16,652	7,482	7,482	44.9	44.9	27
	지역간선국도2차건설지원	36,330	21,798	10,806	10,806	49.6	49.6	29.7
	지역간선국도3차건설지원	39,831	23,899	13,552	13,552	56.7	56.7	34
	지역간선국도4차건설지원	34,697	20,818	10,761	10,761	51.7	51.7	31
	진곡산단진입도로	1,000	500	0	0	0	0	0
	진상-하동(2) 국도건설	1,500	470	0	0	0	0	0
	진안-신리물류간선1차건설	12,337	7,402	2,337	2,337	31.6	31.6	18.9
	천성-눌차민자접속도로	81,558	81,558	81,558	53,475	100	65.6	65.6
	천호하정로 중앙버스전용 자로 확충	1,113	0	0	0	0	0	0
	철도역환승동선개선	3,600	3,600	1,800	602	50	16.7	16.7
	청암-삼장국도건설	8,298	5,196	3,450	3,450	66.4	66.4	41.6
	청양-홍성1국도건설	670	210	0	0	0	0	0
	청천-문광국지도건설	624	374	0	0	0	0	0
	초지대교-온수국지도건설	10,770	6,462	6,500	476	100.6	7.4	4.4
	춘천-동면 국도건설	1,500	470	0	0	0	0	0
	충주-제천고속도로건설	40,000	0	0	0	0	0	0
	탕정T/C산단진입도로	26,797	18,614	10,491	10,491	56.4	56.4	39.2
	태안-보령국도건설	9,021	2,824	0	0	0	0	0
	통일의주로 중앙버스전용자로 확충	6,642	0	0	0	0	0	0
	평택-음성고속도로건설	16,200	5,700	3,000	3,000	52.6	52.6	18.5
	풍각-화양지역간선5차건설	10,925	6,555	3,958	3,958	60.4	60.4	36.2
	하동-완사(1) 국도건설	1,843	577	0	0	0	0	0
	하동-완사(2) 국도건설	1,843	577	0	0	0	0	0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 (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 (B)	집행 실적 (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하동-하계국도건설	500	157	0	0	0	0	0
	한림-생림국지도건설	4,500	2,700	5,094	148	188.7	5.5	3.3
	해남화원산단진입도로	9,110	0	109	109	0	0	1.2
	현경-해제 국도건설	7,000	2,191	0	0	0	0	0
	호계-불정국도건설	13,517	4,231	0	0	0	0	0
	홍농-백수지역간선5차건설	14,000	8,400	193	193	2.3	2.3	1.4
	화산-옥동국대도건설	15,164	0	14,682	14,682	0	0	96.8
	화양-나진 국지도건설	2,100	1,260	500	21	39.7	1.7	1
	화양-적금국도건설	11,684	3,657	0	0	0	0	0
	휴암-오동물류간선1차건설	20,600	12,360	9,151	7,397	74	59.8	35.9
	국도유지운영	990	990	990	592	100	59.8	59.8
	광양항(지자체)	6,719	6,719	319	319	4.7	4.7	4.7
	보령신항	2,000	0	0	0	0	0	0
	부산신항 서컨부두개발	31,826	0	68	68	0	0	0.2
	부산신항(지자체)	12,000	12,000	12,000	390	100	3.3	3.3
	부산항(지자체)	50,000	50,000	50,000	20,500	100	41	41
	부산신항 동동지구 배후부지	77,732	0	47,919	47,919	0	0	61.6
	새만금신항	7,000	0	0	0	0	0	0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1,500	1,500	0	0	0	0	0
	서귀포항	2,405	2,405	2,405	1	100	0	0
	울릉(사동)항	3,030	0	297	297	0	0	9.8
	일반항(지자체)	3,000	3,000	2,999	1,650	100	55	55
	제주항	1,002	1,002	1,002	0	100	0	0
	추자항	3,434	3,434	3,434	0	100	0	0
	포항영일만신항	50,731	50,731	24,495	24,495	48.3	48.3	48.3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40,612	19,473	5,887	5,887	30.2	30.2	14.5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2,670	1,822	1,150	1,150	63.1	63.1	43.1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계상	42	19	9	9	50.3	48.6	21.4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계상	17,460	14,877	6,354	6,354	42.7	42.7	36.4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6,427	6,427	6,427	3,409	100	53	53
	항만운영시설 설치	388	388	170	170	43.7	43.7	43.7
	해양항만사업관리운영	90	90	10	10	11	11	11
	철도사고조사체계구축	200	159	14	14	8.9	8.8	7
	광명경전철건설	4,205	2,944	0	0	0	0	0
	군장산단인입철도	3,400	0	2,400	2,400	0	0	70.6
	대구권광역철도기본조사	2,000	1,000	0	0	0	0	0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	2,400	0	0	0	0	0	0
	대구지하철2호선연장	49,000	35,000	25,000	183	71.4	0.5	0.4
	별내선 복선전철	1,500	700	0	0	0	0	0
	부산-김해간경전철건설	57,400	40,180	13,724	13,724	34.2	34.2	23.9
	부산지하철1호선연장	12,000	1,800	1,800	699	100	38.8	5.8
	부산지하철2호선연장	600	0	0	0	0	0	0
	부전-마산 복선전철	9,300	0	0	0	0	0	0
	서울-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4,700	3,290	0	0	0	0	0
	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1,000	0	0	0	0	0	0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B)	집행 실적(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신안산선복선전철	11,600	0	0	0	0	0	0
	용인경전철건설	7,000	4,900	4,860	0	99.2	0	0
	의정부경전철 건설	37,500	26,250	27,520	0	104.8	0	0
	인천국제공항철도운영지원	166,600	0	0	0	0	0	0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	170,000	119,000	122,713	9,131	103.1	7.7	5.4
	포승-평택 철도건설	2,000	1,000	0	0	0	0	0
	건설사업정보시스템(정보화)	3,300	2,000	0	0	0	0	0
	건설산업DB구축(정보화)	1,450	1,200	750	750	62.5	62.5	51.7
	건축행정정보화(정보화)	3,750	1,437	93	93	6.4	6.4	2.5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구축 (정보화)	850	553	553	216	99.9	39.1	25.4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정보화)	17,662	17,662	11,506	11,474	65.1	65	65
	국토해양행정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4,747	3,772	1,484	1,484	39.3	39.3	31.3
	국토해양재난정보체계구축 (정보화)	1,467	1,027	0	0	0	0	0
	민원정보시스템(민원콜센터) 고도화 사업	294	294	0	0	0	0	0
	사이버안전센터구축 및 운영 (정보화)	1,400	1,400	334	334	23.8	23.8	23.8
	선박자동식별시스템	1,550	1,510	854	854	56.6	56.6	55.1
	운수중사자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300	300	146		48.7	0	0
	운수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185	0	54	54	0	0	29.1
	자동차전산망고도화(정보화)	7,209	7,209	1,743	1,743	24.2	24.2	24.2
	종합물류정보망(정보화)	1,580	10	0	0	0	0	0
	지도전산화(정보화)	2,515	1,636	851	851	52	52	33.8
	철도공안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	490	490	241	241	49.1	49.2	49.2
	토석정보공유시스템운영(정보화)	210	0	0	0	0	0	0
	항공정보시스템(정보화)	1,400	1,215	216	216	17.8	17.8	15.4
	해양환경안전정보(정보화)	2,226	1,221	797	797	65.2	65.2	35.8
	해운물류정보(정보화)	6,283	3,560	1,889	1,889	53.1	53.1	30.1
	화물운송가맹사업정보화지원	2,400	2,400	0	0	0	0	0
	U-감사종합시스템 구축	100	44	0	0	0	0	0
	공항개발조사	1,300	0	0	0	0	0	0
	울진공항건설	1,000	1,000	492	492	49.2	49.2	49.2
	첨단 우주항공 인력양성	3,599	3,599	1,600	1,600	44.5	44.5	44.5
	항공기사고조사및정비유지	1,191	905	398	398	43.9	44	33.4
	항공기안전성인증수행	551	347	228	228	65.7	65.7	41.4
	항공안전교육훈련	1,315	821	503	503	61.2	61.2	38.2
	항공안전본부전산운영경비	100	66	0	0	0	0	0
	다목적댐보상비출자	1,000	1,000	0	0	0	0	0
	댐연구및운영체계개선	600	0	190	190	0	0	31.7
	밀양댐치수능력증대	500	0	0	0	0	0	0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 (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 (B)	집행 실적 (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보령담치수능력증대	50	0	0	0	0	0	0
	부항담건설(보조)	2,000	1,500	2,000	1,000	133.3	66.7	50
	성덕담건설(보조)	1,500	1,100	1,500	516	136.4	46.9	34.4
	운문담치수능력 증대	500	0	150	150	0	0	30
	국제교통포럼분담금	50	0	0	0	0	0	0
	기타국제기구분담금	100	100	0	0	0	0	0
	UN ESCAP 분담금	12	12	0	0	0	0	0
	강우레이더설치및보완	11,500	10,700	2,813	2,716	26.3	25.4	23.6
	개발제한구역관리	8,550	7,115	3,989	3,989	56.1	56.1	46.7
	건강보험금	104	60	36	36	60.4	60.4	34.9
	건설기계 확인검사 시설 및 장비구축사업	4,000	2,000	4,000	93	200	4.7	2.3
	건설조사시험	159	101	4	4	3.9	4	2.5
	공공분양	550,000	550,000	207,862	207,862	37.8	37.8	37.8
	관공선 건조 및 수리	71	71	0	0	0	0	0
	관공선건조 및 운영	6,042	4,656	2,127	2,127	45.7	45.7	35.2
	광역권역 BRT 기초조사	2,500	1,251	2,483	0	198.5	0	0
	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조성	1,000	795	491	491	61.8	61.8	49.1
	구로차량기지이전	2,000	200	0	0	0	0	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722	388	231	231	59.6	59.6	32.1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3,500	0	0	0	0	0	0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6,063	4,511	2,798	2,798	62	62	46.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000	0	0	0	0	0	0
	국제협력	604	444	299	299	67.3	67.3	49.5
	국토해양인재개발원	1,748	1,137	0	0	0	0	0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전산운영경비	270	177	61	61	34.2	34.2	22.5
	국토환경디자인 시험사업 지원	4,800	4,600	1,385	1,385	30.1	30.1	28.9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비	650	650	247	247	37.9	37.9	37.9
	극지역 측량 및 지도제작	1,000	660	0	0	0	0	0
	글로벌인프라펀드	5,000	500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금운영체계구축	3,800	3,800	1,074	1,074	28.3	28.3	28.3
	기업도시지원	270	40	17	17	41.6	42.5	6.3
	낙도보조항로결손보상금	945	845	537	537	63.5	63.6	56.8
	내항어객선운임보조	350	350	350	200	100	57.1	57.1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3,000	0	0	0	0	0	0
	단양수중보건설	1,000	0	0	0	0	0	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	105	53	21	21	39.9	39.9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전산 운영경비	19	13	6	6	43.1	43.1	29.5
	대중교통국제정책포럼	200	76	1	1	0.9	0.9	0.4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지자체)	7,762	7,762	7,762	713	100	9.2	9.2
	동대구역환승센터	3,000	3,000	0	0	0	0	0
	디지털지적구축	4,509	3,269	2,356	2,016	72.1	61.7	44.7
	민원콜센터운영	642	426	213	213	49.9	49.9	33.1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B)	집행 실적(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방치폐선정리지원	27	27	27	0	100	0	0
	본부운영지원(기관,공제,책임)	1,834	1,091	583	583	53.4	53.4	31.8
	본부운영지원(민자,건설,비축)	352	176	2	2	1.1	1.1	0.6
	본부전산운영경비	4,759	3,149	1,779	1,779	56.5	56.5	3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	10	5	0	0	0	0	0
	부품자기인증제도 시행	4,600	2,000	0	0	0	0	0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조사 시범사업	1,563	0	0	0	0	0	0
	산곡2교 복합환승시설	4,656	3,000	0	0	0	0	0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확장 제세공과금	5,500	3,000	0	0	0	0	0
	영산강급수체계구축	693	0	0	0	0	0	0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1,845	345	144	144	41.8	41.8	7.8
	우수화물인증업체인증	100	100	0	0	0	0	0
	원주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	10	5	2	2	44	44	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전산 운영경비	19	13	4	4	28.7	28.7	19.6
	유지보수(총액)	500	277	26	26	9.3	9.3	5.1
	이동편의실태조사	200	43	0	0	0.7	0	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	33	17	11	11	63.9	63.9	31.9
	전국유역조사	1,800	1,170	0	0	0	0	0
	전국호환교통카드장비 설치지원	500	0	0	0	0	0	0
	전산운영경비	28	15	8	8	55.4	55.4	29
	전산운영경비	15	15	7	7	49.3	49.3	49.3
	정기하자검사용역	56	56	34	34	61.5	60.7	60.7
	정책기획연구운영	1,490	1,490	354	354	23.7	23.7	23.7
	제도개선및갈등관리	337	259	48		18.5	0	0
	제주도(III)광역상수도건설	2,000	0	0	0	0	0	0
	축전 광역환승센터	2,981	2,981	0	0	0	0	0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지원사업	3,000	1,900	2,000	990	105.3	52.1	33
	직원관사임차(서항청)	21	10	7	7	70	70	33.3
	철도대학운영	1,367	683	434	434	63.5	63.5	31.8
	철도표준규격관리위탁	600	600	300	300	50	50	50
	철도효율화연구개발사업지원	2,000	415	258	258	62.2	62.2	12.9
	첨단도로교통체계	2,350	2,150	601	601	27.9	28	25.6
	첨단미래형자동차안전성평가 시험설비구축	22,400	7,900	12,000	5,004	151.9	63.3	22.3
	청사신축 지원	781	0	0	0	0	0	0
	표지시설	4,011	3,996	2,756	2,756	69	69	68.7
	표지시설	51,017	49,388	30,665	30,665	62.1	62.1	60.1
	한국건축문화대상 추진	50	0	0	0	0	0	0
	항운노조원상용화 지원	20,000	1,412	744	744	52.7	52.7	3.7
	해사고등학교 시설유지	1,850	1,850	911	911	49.3	49.2	49.2

부처	사업	2009 예산 (추경 기준)(A)	2009년 6월말 기준 집행실적					연간 진도율 (실집행 기준) (D/A)
			계획(B)	집행 실적(C)	실집행 실적(D)	집행률 (C/B)	실집 행률 (D/B)	
	해상안전 국제협력	2,079	1,927	527	527	27.3	27.3	25.3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13,189	11,939	10,089	4,699	84.5	39.4	35.6
	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도입	855	428	428	5	100	1.2	0.6
	해양에너지전문인력양성	900	900	900	300	100	33.3	33.3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6,110	5,727	2,987	2,987	52.2	52.2	48.9
	해외건설시장개척	3,300	3,140	3,070	214	97.8	6.8	6.5
	해운물류협력 및 연구	800	400	223	223	55.8	55.8	27.9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1,206	740	246	246	33.2	33.2	20.4
	행정소송수행변호사선임	371	0	124	124	0	0	33.6
	혁신도시 건설지원	150,000	99,944	99,811	39,495	99.9	39.5	26.3
	혁신도시 청사신축	899	500	0	0	0	0	0
	홍수통제소운영경비	2,701	2,054	889	889	43.3	43.3	32.9
	홍수통제소전산운영경비	1,556	1,404	623	623	44.4	44.4	40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균특)	5,251	5,251	5,251	2,548	100	48.5	48.5
	화물차 감차보상	20,000	20,000	18,000	0	90	0	0
	화물차 개조지원	35,000	35,000	0	0	0	0	0
	ICAO활동지원	475	345	210	210	61	60.9	44.2

자료: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③ 상반기 이·전용감액 실태 분석

1. 현 황

가. 분석 개요

- 2009년 3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전용·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예산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2009년도 상반기(제1·2분기) 이용·전용·이체내역을 분석
- 이·전용감 사업은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부터 감액되고 있는 바, 정부 스스로도 우선순위가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인 사업으로 판단·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시 동사업들에 대해 조정 필요(세출구조조정의 한 방안)

나. 2009년도 상반기 이·전용감액 규모 : 1조 3,319억원

- 정부부처 46개 기관의 2009년도 상반기 재정운용을 점검한 결과, 2009년 상반기(1월~6월) 이·전용감액 재정규모(일반·특별회계·기금 포함)는 1조 3,319억원임.
- 이용감액 : 2,571억원, 전용감액 : 1조 747억원

다. 일반회계 2009년 상반기 이·전용감액 규모 : 5,469억원

□ 이용감액 : 388억원, 전용감액 : 5,081억원

[표 1] 2009년도 상반기 부처별 이·전용감 재정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이·전용감 재정규모 (일반·특별회계·기금)	회계·기금	이용액(A)	전용액(B)	합 계 (A+B)
감사원	377	일반회계	0	377	377
경찰청	5,471	일반회계	0	5,235	5,23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0	236	236
공정거래위원회	367	일반회계	0	367	367
관세청	123	일반회계	0	123	123
교육과학기술부	175,039	일반회계	1,520	173,519	175,039
국가보훈처	6,037	일반회계	0	1,786	1,786
		보훈기금	0	4,251	4,251
국가인권위원회	0	일반회계	0	0	0
국무총리실	963	일반회계	0	963	963
국민권익위원회	772	일반회계	0	772	772
국방부	47,186	일반회계	6,801	31,941	38,742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0	3,541	3,541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0	4,903	4,903
국세청	7,889	일반회계	0	7,889	7,889
국토해양부	465,019	일반회계	0	119,686	119,686
		교통시설특별회계	0	325,283	325,283
		국가균형특별회계	0	20,050	20,050
금융위원회	0	일반회계	0	0	0
기상청	1,546	일반회계	0	1,546	1,546
기획재정부	134,864	일반회계	2	1,164	1,166
		공공자금관리기금	0	115,000	115,000
		복권기금	0	18,698	18,698
노동부	175,521	일반회계	7,248	5,639	12,887
		고용보험기금	87,881	400	88,281
		임금채권보장기금	73,478	0	73,478
		근로자복지진흥기금	0	875	875

부처명	이·전용감 재정규모 (일반·특별회계·기금)	회계·기금	이용액(A)	전용액(B)	합 계 (A+B)
농림수산식품부	64,038	일반회계	0	13,950	13,95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0	14,376	14,376
		농지관리기금	25,000	5	25,005
		축산발전기금	0	4,253	4,253
		수산발전기금	0	6,454	6,454
농촌진흥청	14,883	일반회계	0	14,256	14,25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	627	627
대법원	913	일반회계	0	913	913
대통령실	0	일반회계	0	0	0
문화재청	276	일반회계	0	276	276
문화체육관광부	46,073	일반회계	16,800	767	17,567
		문화예술훈진흥기금	354	0	354
		관광진흥개발기금	2,618	0	2,618
		국민체육진흥기금	25,534	0	25,53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1	일반회계	0	11	11
방위사업청	3,433	일반회계	0	3,433	3,433
방송통신위원회	30	일반회계	0	30	30
법무부	14,971	일반회계	5,461	9,505	14,966
		교도작업특별회계	0	5	5
법제처	0	일반회계	0	0	0
병무청	83	일반회계	0	83	83
보건복지가족부	7,834	일반회계	0	3,760	3,76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0	341	34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0	120	120
		국민건강증진기금	0	1,253	1,253
		청소년육성기금	0	2,360	2,360
산림청	373	일반회계	0	373	373
소방방재청	1,733	일반회계	1,032	701	1,733
식품의약품안전청	2,775	일반회계	0	2,775	2,775
여성부	0	일반회계	0	0	0
외교통상부	6,155	일반회계	6	6,149	6,155
조달청	227	조달특별회계	0	227	227
중소기업청	3,472	일반회계	0	3,472	3,47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0	일반회계	0	50	50
진실과화해 과거 정리위원회	0	일반회계	0	0	0

부처명	이·전용감 재정규모 (일반·특별회계·기금)	회계·기금	이용액(A)	전용액(B)	합 계 (A+B)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80	일반회계	0	80	80
통계청	92,627	일반회계	0	92,627	92,627
통일부	161	일반회계	0	161	161
특허청	17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0	175	175
해양경찰청	55	일반회계	0	55	55
행정안전부	3,558	일반회계	0	3,558	3,558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38,951	행정도시특별회계	0	38,951	38,951
헌법재판소	10	일반회계	0	10	10
환경부	7,560	환경개선특별회계	0	3,768	3,768
		한강수계관리기금	3,432	160	3,592
		금강수계관리기금	0	200	200
합 계	1,331,906		257,167	1,074,739	1,331,906

자료: 각부처 제출자료. 2009. 8.

[표 2] 연도별 이용·이체, 전용 금액 비교

(단위: 억원, %)

	이용·이체			전용			A+B	세출 예산액(C)	(A+B)/C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A)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B)			
2003	2,136	4,810	6,946	8,252	6,416	14,668	21,614	1,828,636	1.18
2004	8,430	5,512	13,942	9,200	4,869	14,069	28,011	1,860,228	1.50
2005	6,348	1,139	7,487	10,264	6,725	16,989	24,476	1,958,413	1.25
2006	81,693	157	81,850	8,075	9,524	17,599	99,449	2,042,145	4.87
2007	1,800	297	2,097	6,555	12,490	19,045	21,142	2,009,519	1.05
5년평균	20,082	2,383	22,465	8,469	8,005	16,474	38,939	1,939,788	2.01
2008	1,003,745	353,518	1,357,263	10,794	9,027	19,821	1,377,084	2,199,405	62.6

주: 1. 2006년에는 방위사업청 개칭으로 국방부로부터의 이체금액이 약 6조원 가량이었음.

2. 세출예산액은 총계기준이며,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2008년 나라살림」에서 활용.

3. 2008년 이용·이체액 규모가 큰 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에 기인.

자료: 2003~2008 각 연도 「결산개요」, 구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표 3] 2007년, 2008년 이용 및 전용 금액 비교

(단위: 억원, %)

	2007		2008		증감(증감률)	
	이용	전용	이용	전용	이용	전용
일반회계	1,627	6,555	3,810	10,794	2,183(134.2)	4,238(64.7)
특별회계	255	12,490	1,081	9,027	826(323.6)	-3,462(-27.7)
합 계	1,882	19,045	4,891	19,821	3,009(159.9)	776(4.1)
이·전용 합계(A)	20,927		24,712		3,785 (18.1)	
세출예산액(B)	2,009,519		2,199,405		189,886 (9.4)	
A/B	1.04		1.12		0.08%p (7.7%)	

주: 자료의 제약으로 2003~2006년은 이용금액과 이체금액을 구분할 수 없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09.9.

2. 주요 쟁점

가. 2009년 상반기 이·전용감액 과다 부처

- 재정규모상 이·전용감액(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제외) 과다부처로는
- ① 국토해양부(4,650억원), ② 교육과학기술부(1,750억원), ③ 국방부(472억원),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89억원) 등임

[표 4] 2009년도 상반기 재정규모상 이·전용감액 과다 4개부처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이·전용감 규모	회계·기금별	이·전용감 사유
국토해양부	465,019	119,686 (일반회계)	국토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의 차질없는 추진 * 정보센터 유지보수 예산(08년 250백만원)이 09년 미반영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업무와 직결되는 '하천주변 국토환경

		<p>환경개선 및 디자인기준등에 대한 연구 추진 여비 지방청 배분, 영어 에디터 채용 증개축 대상건물이 철도시설자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용 '09년 예산 편성후 전산작업시 목선택 오류로 실시설계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목간 조정을 통해 등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철도공 사에 지급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지원 교통안전공단 출연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전산작업이 잘못되어 목조정 직접용역사업이나 당초 예산편성 전산작업시 잘못되어 목조정 4대강 추진본부 운영비 지원 본부 인건비 소속기관별 배분 그린벨트훼손부담금으로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야 하나, 당초 예산편성 전산작업시 잘못되어 목조정 추진 주체(지자체, 주택공사)로 사업추진을 위해 전용 * 지자체에서 관리주체가 다른 주공 관리물량에 대하여는 지방비 지원불가입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소속기관 공익요원 부족한 매식비 지원 지방항만청에 운영중인 공익요원 인건비 부족분 지원 보수에서 연금 부족분 지급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프로그램 지자체 배포 및 교육을 위한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확산사업' 추진 정책기획연구 수행 위해 일반수용비로 전용 기본경비 소속기관에 배분 CALS 전담기관 통합운영에 따라, “항만건설 CITIS 민간위탁사업비”중에서 항만CALS 해당 사업비(329.58백만원)를 건설CALS 출연금으로 전용 정책기획연구를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전용 본부 복리후생비 부족에 따른 전용 국가하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한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해 전용</p>
--	--	--

		<p>정책기획연구를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전용 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부족한 수용비 등 전용 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부족한 수용비 등 전용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 잔액을 집행가능한 시설사업으로 전용</p>	
	<p>325,283 (교통시설 특별회계)</p>		<p>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확보 전용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시설비에서 전용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이월이 예상되는 동일 사업 시설비에서 전용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시설비에서 전용 공사 착수를 위해 시설비로 목 변경 호원C 설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이 부족하여 목 변경 토지보상 위해 부족한 보상비 시설비에서 전용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패소로 배상금 지급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비 국무조정실에 지급하 기로 결정 됨에 따라 동사업비 시급한 용역사업 으로 활용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을 집행가능한 시설사업으로 전용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을 집행가능한 시설사업으로 전용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패소로 배상금 지급 D/B구축 등을 위한 ISP 수립을 위해 연구개발 비로 전용(10년부터 민간 위탁)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 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토지보상 위해 부족한 보상비 시설비에서 전용 시설비 확보를 위해 동일사업 토지매입비에서 전용 시설비, 감리비 부족분을 토지매입비 이월이 예상 되는 사업에서 전용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시설비에서 전용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 되는 사업에서 전용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시설비에서 전용 완공 소요 사업비 확보 위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에서 전용 부족한 감리비 확보</p>

			<p>부족한 실시설계비 확보 준공이 시급하여 금년도 부족한 사업비 전용하여 지원 부족한 감리비 확보 감리비 잔액 시설비로 전용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시설비에서 전용 부족한 감리비 확보 기타직(도로관리원)에 대한 3대 보험료 및 국가소송에 따른 배상금 부족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 되는 사업에서 전용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사업조속 시행을 위한 터키 구간 심의 수수료 지급 인천북항 준설토 매립을 위한 준설토투기장 건립 소요 인천남항 법정책임감리비 부족 소요 일반항 건설 법정책임감리 부족 소요 부산항 건설 시설비 부족소요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사업간 부족사업비 전용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국가 패소로 배상금 지급 소요 평택당진항 민자사업 건설분담금 부족 소요</p>
		20,05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p>5대 대도시권 BRT 기초조사를 위해 자치단체 이전으로 전용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불용 초소화를 위해 사업간 부족사업비 전용</p>
교육과학부	175,039	175,039 (일반회계)	<p>명예퇴직 수당, 각 대학 전공의 퇴직금 부족 임용결격공무원 보상금 지급, 수시명예퇴직 수당 지급 장학재단 출연금, 명예퇴직 수당 전용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구성</p>
국방부	47,186	38,742 (일반회계)	<p>환차손 보전(국제군진의학협회비 및 국제군인체육회비) 환차손 보전(연합C4I체계 3,357), 국가배상금 지급(3,437) 정훈교재제작사업 수행방식변경 (외부용역 →홍보원직접수행) 사업수행방식변경(리스→구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164), 홍보계약직 사회보험료 지급(10), 군진의학 연구활동비 지원(31)</p>

			홍보원 전략컨설팅 용역(50) 군특성화고 실습부대 출장비 지원 군산탄약고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설계비 소요총당 방위비분담금 한미간 협의결과에 따른 동일사업 내 목조정 육군 2군단 지휘통제소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개선
		3,541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사업수행방식변경(군직접수행→이천시 주체로 사업추진)
		4,903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우선 착공대상 일반시설 중 주공 기부 대 양여 목록에서 제외된 사업의 기본설계 작성비용 미측에 지불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38,951	38,951 (행정도시특별회계)	보상비 부족 복합시설 설계바·시설비를 복합시설, 학교시설 토지매입비로 전용 세종시설치법과 연계된 사업으로 법 제정이 지연(국회계 류중)되어 설계바·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 행정인턴 및 수습직원 인건비

- 또한, 이들 부처들은 상반기 이·전용감액이 과다한 부처로서 재정의 집행에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국회의 국정감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있어 관리가 요구됨
- 위에서 지적한 4개부처는 일부를 제외하고 이·전용감액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상반기부터 대규모로 이·전용감액이 되고 있음을 볼때, 관련사업들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으로 보여짐

나. 10억원 이상 상반기 이·전용감액 발생사업

- 10억원 이상 상반기 이·전용 감액 발생사업(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및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제외)은 총 92개 사업, 7,428억원임

□ ①국토해양부 62개, ②국방부 7개, ③법무부 4개, ④농림수산식품부 3개, 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개 등임.

- 특히, 국토해양부 사업들의 경우 다수의 사업들이 이용·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감액 하였다고 설명

[표 5] 10억원 이상 상반기 이·전용감액 발생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명	사업명	이용감액	전용감액	이·전용사유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학자금대출기본재산		135,087	장학재단출연금
	일반회계	그린바이오첨단 연구단지조성		38,176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국립영천호국원		1,275	석비각자작업의 집행세목 변경 60백만원 봉안당시시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설계비등1,215백만원
국방부	일반회계	장교인건비	6,801		군사고처리배상금(3, 437) 지급, 환차손보전(3,364)
	일반회계	정보통신기반 체계구축		7,333	사업수행방식변경(리스→구매)
	일반회계	시설부지지원		1,200	군산탄약고집단이주단지조성에 따른 설계비 소요충당
	일반회계	군수지원		19,900	방위비분담금한미간협의결과에 따른 동일사업 내 목조정
	일반회계	독신숙소		3,058	육군2군단지휘통제소 등 안전 사고위험이 있는 시설개선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도하,시추대대		3,541	사업수행방식 변경(군직접수행 →이천시 주체로 사업 추진)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연합토지관리계획		4,903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우선착공대상 일반시설 중 주공기부대양여목록에서제외된 사업의 기본설계 작성비용예지불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철도역 환승 동선 개선		3,600	'09년 예산 편성후 전산작업시 목선택 오류로 실시설계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목간 조정을 통해 동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철도공사에 지급
		국가하천정비		15,000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지원

부처명	회계·기금명	사업명	이용감액	전용감액	이·전용사유
		건설기계 확인검사 시설 및 장비구축 사업		4,000	교통안전공단 출연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전산작업이 잘못 되어 목조정
		국가하천정비		1,482	4대강 추진본부 운영비 지원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확장 제세공과금		5,500	그린벨트훼손부담금으로 민간 이전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당초 예산편성 전산작업시 잘못 되어 목조정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48,900	추진 주체(지자체, 주택공사)로 사업추진을 위해 전용 * 지자체에서 관리주체가 다른 주공 관리물량에 대하여는 지방비 지원불가입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국가하천정비		22,927	국가하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한 토지보상비지급을 위해 전용
		국가하천정비		2,555	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부족한 수용비 등 전용
		국가하천정비		9,512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을 집행가능한 시설사업으로 전용
	교 통 시 설 특별회계	탕정T/C 산단진입도로		1,037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확보 전용
		포항영일만 산단진입도로		6,800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확보 전용
		대덕테크노 산단진입도로		4,581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시설비에서 전용
		성서5차지방산단진입도로		6,000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시설비에서 전용
		고령성주1국도건설		6,052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이월이 예상되는 동일사업 시설비에서 전용
		진동우회도로		5,800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시설비에서 전용
현동임곡2지역간선2차건설		10,180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시설비에서 전용		

부처명	회계·기금명	사업명	이용감액	전용감액	이·전용사유
		온산두왕지역간선 2차건설		9,464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시설비에서 전용
		태백미로21지역간 선4차건설		3,000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이월이 예상되는 동일사업 시설비에서 전용
		일반항		10,888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비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을 집행가능한 시설사 업으로 전용
		부산신항(2단계)		15,000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용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을 집행가능한 시설사 업으로 전용
		인천북항		3,800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용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을 집행가능한 시설사 업으로 전용
		인천신항		2,200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용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을 집행가능한 시설사 업으로 전용
		부산신항 배후철 도(1단계)		21,000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용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을 집행가능한 시설사 업으로 전용
		지역 간선5 차건설 지원		6,903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에서 전용
		성남장호원 5 지역 간선5차건설		2,400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에서 전용
		군내고군지역간선 5차건설		4,817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에서 전용
		홍농백수지역간선 5차건설		7,462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에서 전용
		소천서면지역간선 5차건설		2,600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에서 전용
		지역 간선 국 도 4 차 건설지원		16,235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시설비, 감리 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부처명	회계·기금명	사업명	이용감액	전용감액	이·전용사유
		화원읍포지역간선 4차건설		7,000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시설비, 감리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퇴계원진접지역간선 3차건설		14,940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지역간선국도3차 건설지원		8,774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아산천안지역간선 2차건설		28,471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산내상북지역간선 2차건설		3,400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현동임곡2지역 간선2차건설		3,300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온산두왕지역간선 2차건설		5,000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지역간선국도2차 건설지원		7,529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소정배방국대도건설		6,277	시설비, 감리비 부족분을 토지매입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대덕테크노 산단 진입도로		2,971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를 시설비에서 전용
		음암성연물류간선 1차건설		2,000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배방탕정물류간선 1차건설		6,800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청양우성1지역간선 5차건설		2,206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청양우성2지역간선 5차건설		2,700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청양홍성1지역간선 5차건설		4,000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청양홍성2지역간선 5차건설		3,000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석문가곡지역간선 5차건설		2,825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부처명	회계·기금명	사업명	이용감액	전용감액	이·전용사유
		대산석문지역간선 5차건설		3,000	토지매입비,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조치원전의산단 진입도로		3,000	시설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오송생명(2)산단 진입도로		7,500	시설비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군장(군산3)산단 진입도로		5,104	시설비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부산장안 산단 진입도로		3,600	시설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해남화원 산단진입도로		3,662	토지매입비, 시설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
		울산길천 산단진입도로		4,844	토지보상위해 부족한 보상비 시설비에서 전용
		국도유지보수		1,603	기타직(도로관리원)에 대한 3대 보험료 및 국가소송에 따른 배상금 부족
		분천송산물류간선 1차건설		3,500	기타직(도로관리원)에 대한 3대 보험료 및 국가소송에 따른 배상금 부족
		포승평택 철도건설		2,000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사업조속 시행을 위한 턴키구간 심의수수료 지급
		부산항		4,469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불용 초소화를 위해 사업간 부족사업비 전용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1,216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불용 초소화를 위해 사업간 부족사업비 전용
		포항영일만신항		3,249	평택당진항 민자사업 건설분담금 부족 소요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광역권역 BRT 기초조사		2,480	5대 대도시권 BRT 기초조사를 위해 자치단체이전으로 전용
		수계치수사업		17,570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불용 초소화를 위해 사업간 부족사업비 전용

부처명	회계·기금명	사업명	이용감액	전용감액	이·전용사유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정책품질관리및 경제교육지원		1,071	경제교육협의회사업예산(출연금)을 경제교육주관기관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전용
노동부	일반회계	노사파트너 프로그램지원		4,000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따라 한국노동교육원폐지로 노사관계안정화를 위한 출연사업을 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할 수 없어 전용
농수산 식품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1,000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시행주체농관원 변경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산물원산지관리		1,298	농산물원산지관리 보조인력 채용
	축산발전 기금	자연순환농업활성화		3,200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필요
농촌 진흥청	일반회계	국책기술개발		2,561	대단위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 규모 조정
법무부	일반회계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3,000		형사보상금부족
	일반회계	기관운영기본경비		1,731	행정인턴임금부족분, 행정인턴 보험료 부족분
	일반회계	광주교도소		5,618	전자경비시스템등 시설비 부족분
	일반회계	장흥교도소		1,340	물가인상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보건 복지 가족부	일반회계	희망복지129센터 설치		2,842	당초,시군구콜센터설치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등 연구용역 수행, 필요장비도입등을 추진하였으나, 비상경제대책회의('09.1.22,2.5)시 중앙보건복지콜센터확대강화 및 시군구민생안정추진TF의 연계를 통한 종합안내, 상담, 욕구조사,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전용
식품 의약품 안전청	일반회계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1,705	식품이력추적관리표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동일사업내 비목 조정
외교 통상부	일반회계	기타공관공통 운영기본경비		1,995	'09년 상반기 환차손발생으로 인한 3/4분기 재외공관기본경비 정기배정액 부족분 총당

부처명	회계·기금명	사업명	이용감액	전용감액	이·전용사유
중소 기업청	일반회계	시장경영혁신지원		1,200	시장및광역단위 재래시장 상품권을 전국공동상품권으로확대하고,재래시장발레파킹제 도입을 위한 자원 마련 *210목(400백만원) 및 230목(800백만원)에서 320목으로 전용
	일반회계	원스톱기업지원 비즈니스링크		1,700	현장클리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접운영에서 경영 및 기술지도전문기관인 「한국경영기술컨설팅협회」를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210목에서 350목으로 전용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행정 도시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건설		13,200	보상비 부족
	행정 도시 특별회계	복합시설건립		22,567	복합시설설계비·시설비를 복합 시설, 학교시설 토지매입비로 전용
	행정 도시 특별회계	시청사건립		3,116	복합시설설계비·시설비를 복합 시설, 학교시설 토지매입비로 전용
행정 안전부	일반회계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정보화)		2,500	사업추진방식 변경
환경부	환경 개선 특별회계	국가장기생태연구		1,700	사업비내 목간 전용 (출연금→시험연구비)
합계			9,801	733,002	

[담당] 부길환 분석관(788-4643)

④ 국고금 및 일시차입금의 운용실태 분석

1. 현 황

가. 국고금의 의의

-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된 국가예금 등의 자산을 의미함
 - 국고금은 그 외에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함
- 국고금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다음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용할 것
 -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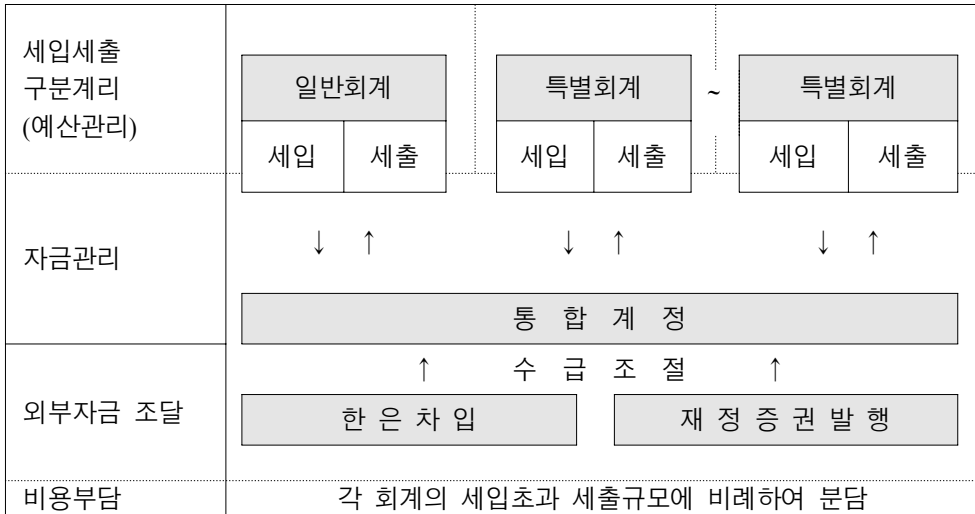
나.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

- 국고금의 ‘수입’은 조세 등에 의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의미함
-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동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 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지출’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함

다. 국고금의 운용체계

- 국고금의 세입세출은 회계별로 구분 계리하되, 자금은 ‘통합계정’을 통해 일괄 관리
 - 세입세출 관리: 일반회계 + 18개 특별회계
 - 자금관리: 통합계정을 통해 종합관리(일반회계 + 13개 특별회계)
 - 별도의 법률에 의해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4개 기업특별회계와 기관운영의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제외

[그림 1] 국고금 운용 체계



라. 통합계정 여유자금의 운용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음
 -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함

-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통합계정 자금과 같이 운용할 수 있음

2. 현 황

가. 2008년도 국고금은 총 232.2조원을 조달하여 총 222.9조원을 지출

- 수입실적은 계획 228조원 대비 4.2조원 많으며, 지출실적은 계획 227.3조원 대비 4.4조원 적음
 - 월 평균 19.3조원의 수입으로 18.6조원을 지출하였음
- 일시차입금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잉여금은 14.7조원을 지출하였음

나. 2008년도 월별 세부운용 실적

- 수입은 10월에 가장 많은 35.7조원이 발생하였으며, 12월에 가장 많은 23.7조원이 지출되었음
- 반면, 8월에는 가장 적은 6.6조원이 수납되었으며, 12월에 가장 적은 13.3조원이 지출되었음

[표 1] 2008년도 국고금 운용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평균
기초 잔고	실적	0.0	12.6	11.0	8.4	15.5	15.5	13.4	17.9	8.6	8.3	15.8	9.9	136.9	11.4
	계획	24.9	7.4	22.2	24.8	14.5	12.3	25.1	15.0	17.0	30.9	16.8	17.0	228.0	19.0
수입	실적	23.4	10.7	14.3	32.0	19.1	16.5	24.1	6.6	18.6	35.7	7.3	23.7	232.2	19.3
	계획	24.9	7.4	22.2	24.8	14.5	12.3	25.1	15.0	17.0	30.9	16.8	17.0	228.0	19.0
일시차입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년도 잉여금 활용		7.7	5.0	2.0	-3.0	-2.1	0.0	-3.0	0.0	0.0	-6.0	0.0	-0.7	0.0	0.0
지출	계획	28.7	10.8	24.6	26.7	16.2	15.4	17.7	14.7	16.3	24.1	12.4	19.6	227.3	18.9
	실적	18.4	17.3	19.0	21.9	17.1	18.6	16.5	16.0	19.0	22.1	13.3	23.7	222.9	18.6
기말 잔고	실적	12.6	11.0	8.4	15.5	15.5	13.4	17.9	8.6	8.3	15.8	9.9	9.3	146.2	12.2

주: 통합계정 등 모든 회계·계정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다. 2009년 7월말 현재 국고금은 총 166.7조원을 조달하여, 총 175.1조원을 지출

□ 7월말까지 수입실적은 계획 165.9조원 대비 0.8조원이 많으며, 지출실적은 계획 180.5조원 대비 9.9조원이 적음

- 월 평균 13.9조원의 수입으로 14.6조원을 지출하였음

□ 일시차입금은 2008년과 달리 총 17조원을 사용하였으며, 7월에 5조원을 상환하였음

- 전년도 잉여금은 12.3조원을 지출하였음

라. 2009년도 1~7월 월별 세부운용 실적

- 수입은 4월에 가장 많은 38.6조원이 발생하였으며, 1월에 가장 많은 36.6조원이 지출되었음
- 반면 3월에는 가장 적은 15.0조원이 수납되었으며, 3월에 가장 적은 2.3조원이 지출되었음

[표 2] 2009년도 1~7월 국고금 운용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평균
기초 잔고	실적	0.0	8.6	3.4	2.3	10.1	10.5	3.7	38.6	3.2
	계획	29.5	16.0	23.5	31.3	20.4	19.2	26.0	165.9	13.8
수입	실적	30.6	12.4	15.0	38.6	19.6	21.9	28.6	166.7	13.9
	일시차입금	7.0	3.0	4.0	0.0	0.0	3.0	-5.0	12.0	1.0
전년도 잉여금 활용		7.5	1.2	2.0	-3.3	1.5	-1.2	-0.2	7.6	0.6
지출	계획	45.8	23.3	19.1	29.1	21.7	26.3	19.8	185.0	15.4
	실적	36.6	21.8	22.0	27.5	20.8	30.5	15.8	175.1	14.6
기말 잔고	실적	8.6	3.4	2.3	10.1	10.5	3.7	11.2	49.8	4.1

주: 통합계정 등 모든 회계·계정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3. 주요 쟁점

가. 2009년 일시차입금의 효율적인 상환 필요

-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에 따라 2008년과 달리 17.0조원의 일시차입금을 사용하였음
- 일시차입금 사용에 따라 큰 폭의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7월말 현재 이자상환 예산으로 편성된 259억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대신 국고금 운용수익 중 281억원이 이자상환을 위해 지출됨
- 향후 일시차입금은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상환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09년 9월말 이후 약 300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시차입금은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함
- 또한 불필요한 이자비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시차입금의 사용은 가급적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 2009년 일시차입금 한도는 통합계정(우체국보험·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2개 기타특별회계 적용) 2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우편사업특별회계 1,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0조원 등임

나. 체계적인 수입과 지출계획 수립 필요

-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런데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은 매월 계획과 실적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수입실적은 2008년의 경우 8월과 11월에 계획대비 50% 미만에 불과하며, 2월, 3월, 5월, 6월, 12월에는 계획과 실적이 3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9년에도 2월, 3월, 4월에 수입계획과 실적은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출실적은 2008년의 경우 2월에 계획대비 60.0% 많으며, 1월, 3월, 6월, 12월에는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9년에도 1월과 3월, 6월, 7월에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고금 운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계획과 실적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일시차입금의 사용을 줄일 필요
 -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당] 황선호 분석관(788-4624)

⑤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재정운용 점검

1. 현 황

가. 분석 개요

□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지적된 사업 중 2009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136개 사업과 개별사업별 분석 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지적된 28개 사업의 총 164개를 대상으로 2009년 재정운용현황을 점검함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2008년 예산 혹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반면, 최근 4년간(2005~2008년) 평균집행률도 70% 미만인 사업으로 정의

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7월말 기준 집행실적

□ 총 164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09년도 총 예산액은 6조 205억원으로, 2009년 7월말 현재 44.7%인 2조 6,931억원을 집행함

[표 1]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09년 예산집행 현황(7월말 현재)

(단위: 개, 억원, %)

구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기타	계
	직접	보조		
사업수	85	51	28	164
총 예산액	13,544	13,994	32,666	60,205
집행액	6,929	10,442	9,560	26,931
집행률	51.2	74.6	29.3	44.7

주: 기타는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을 의미하며, 이는「2008회계연도 결산분석」의 개별사업별 분석 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2. 주요 쟁점

가. 2009년 7월말 현재 집행률 30% 미만의 집행실적 부진사업

- 164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72개 사업의 경우 2009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저조함

[표 2]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2009년 7월말 현재 집행률이 30%미만인 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기타	계
	직접	보조		
사업수	42	18	12	72
총 예산액	6,072	3,418	19,410	28,899
집행액	1,650	551	1,762	3,962
집행률	27.2	16.1	9.1	13.7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표 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직접사업의 집행률(7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4년평균 집행률	2009 예산액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법무부	서울동부지검	0.0	500	0.0
	창원지검진주지청	0.0	500	0.0
국가보훈처	수업료 등 국비보전	49.5	3,384	52.8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59.5	447	49.2
	카르텔 유발 환경개선	63.1	128	82.8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60.8	220	59.1
기획재정부	WCO분담금	62.1	371	69.2
	국가회계제도 운영	46.9	600	25.2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30.5	25,937	0.0
	경제협력기구활동	45.9	35	68.6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	58.9	273	34.6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	59.7	370	24.9
국세청	공부정취비	43.2	250	22.8
	토지 및 주택조사 지원	59.1	260	25.0
	부산지방국세청	32.6	4,900	44.8
조달청	공사원가관리 시스템 운영	67.8	1,400	40.9
	부산비축기지 이전	59.5	4,376	7.8
통계청	경제센서스	42.3	59	79.7
통일부	남북회담행사	33.3	1,500	9.6
국방부	의무시설개선	69.2	15,346	49.5
	연합방위력증강	44.5	26,113	12.2
	군수 지원	61.8	165,600	41.5
	시설부지 지원	39.8	24,881	21.9
	병영문화개선	51.5	8,184	68.6
	연합토지관리계획사업	52.8	22,653	7.3
	예수금이자상환	55.8	21,962	29.5
	훈련장사업	50.7	3,436	42.2
	도하시추대대 이전사업	25.4	45,219	29.6
	무건리훈련장	52.2	75,305	15.1
	사유재산정리	38.2	30,793	19.9
	복지시설확보사업	48.6	34,143	32.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사업	35.7	29,398	4.9
	교육 지원	68.4	1,257	53.5
방위사업청	제주해군기지	33.2	36,011	18.6
	탐색구조 임무전환장비	64.9	432	0.4
	활주로재포장	54.6	10,104	80.6
	북부전투사령부	6.9	11,121	68.2
	전자전훈련장비(공군)	0.3	27,169	37.7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4년평균 집행률	2009 예산액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발간전환배치	53.9	2,777	70.1
	홍상어	0.0	17,466	0.0
	방위산업 이차보전	30.6	4,320	29.0
행정안전부	지자체재정분석 및 재정제도개선	67.4	750	35.0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강화	66.7	1,136	52.0
경찰청	운전면허시설취득	40.3	916	75.1
소방방재청	지역별안전도 진단	67.5	150	29.9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청사이전신축사업	38.7	8,472	36.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59.1	30,000	5.1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16.7	5,000	16.6
	유통환경개선응차	21.4	4,000	49.0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	8.4	3,000	50.0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지원	16.2	4,000	0.0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건립	6.6	4,000	61.1
	구서올역사 관광자원화	52.7	5,000	16.4
	경정훈련원 건립	16.8	5,448	24.3
문화재청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12.3	8,314	22.7
농림수산 식품부	문화재수리기준제정	50.0	720	43.0
	부정축산물단속	59.0	48	40.5
	생산이력제 도입	59.1	1,800	63.0
	수입양곡대 노후원양어선대체 지원	58.1 48.8	362,334 4,000	41.0 60.0
산림청	사방사업	66.1	31,401	66.3
	산림재해복구 지원(용자금)	28.5	1,800	4.1
	산림재해복구 지원(보상비 등)	58.0	3,200	0.0
특허청	특허소송 수행사업	60.9	178	78.7
보건복지 가족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사업	25.6	102,049	29.6
	국립재활원병상 확충사업	3.7	17,664	19.9
	우수한약육성 지원	62.1	460	42.1
환경부	에코시티모델 시범사업	40.1	930	25.1
	환경무역대응대책추진	69.5	1,026	44.6
노동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69.2	3,456	45.5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47.4	1,490	81.5
	종합직업체험관신축	67.4	11,513	13.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55.7	1,118	79.5
	민간취업기관 지원	59.1	12,075	53.1
	여성고용환경개선응차	59.7	3,800	39.6
	신용보증대위변제	56.8	17,782	21.4
국토해양부	보령신항	0.0	2,000	0.0
	용산공원 조성사업	61.8	1,875	6.5
	종합물류정보망	20.8	1,580	36.1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4년평균 집행률	2009 예산액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물류기업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64.5	2,000	27.9
	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 조성	31.5	1,000	20.3
	인천남항건설	40.9	9,150	76.1
	주거환경개선(기금)	67.3	10,000	14.0
	오염해역 준설사업	39.8	4,600	0.0
해양경찰청	방제정건조	66.7	3,983	26.0

주: 음영으로 표시된 사업은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0%미만인 사업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표 4]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7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4년평균 집행률	2009 예산액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국가보훈처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	33.3	2,646	53.3
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	62.0	29,700	19.6
문화체육 관광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67.8	4,000	50.5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42.3	5,000	12.0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	8.8	4,298	5.6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1.8	15,522	16.5
	윤이상음악당건립-경남(통영)	2.7	2,000	0.0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지원	63.4	2,337	8.2
	공공도서관건립 지원사업	49.4	34,195	42.0
	문화관광자원개발	57.2	154,857	29.6
	생태녹색관광개발	50.3	28,190	37.1
	남해안 관광벨트	51.2	16,459	34.4
	유교문화관광개발사업	60.0	27,260	53.0
	가고 싶은 섬	7.6	4,000	18.7
	관광지개발(제주)	27.5	1,867	15.4
	생활체육공원 조성	57.8	10,553	45.5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	53.4	1,505	20.3
남북체육교류	30.2	1,000	0.0	
육상진흥센터 지원(대구시)	67.0	9000	0.0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 조성	51.2	600	85.6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4년평균 집행률	2009 예산액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방송통신 위원회	쌍무간방송협력협정 이행사업	65.6	1,993	98.0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촉진	14.9	950	79.3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66.2	211,026	54.7
	유교문화관광자원화	45.8	5,213	50.6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34.1	5,705	69.5
	지역문화유산개발	61.6	11,760	66.5
	무형문화재전수 지원사업	50.2	7,330	36.0
농림수산 식품부	노량진수산물시장 건립사업	7.5	10,000	7.6
	유통협약, 명령제 지원	53.1	5,349	0.0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49.9	67,647	0.0
	농작물재해보험금	0.6	23,000	0.0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66.5	1,835	60.7
	친환경양식기반구축	57.7	1,900	32.5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56.5	2,700	0.0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63.7	129,800	69.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사업	52.5	25,550	65.0
	어업자원서식지조사	66	54,559	64.4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사업	35.2	15,440	33.6	
지식경제부	갈사만진입도로3호선(경남)	18.6	2,000	37.6
	의곡-부산과학산단간 도로(경남)	33.5	17,000	89.1
	기타기반시설 지원	48.5	106,635	86.3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전주시)	35.8	900	44.4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구미시)	29.4	2,090	93.5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익산시)	7.5	1,500	54.3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제주 포함)	53.2	174,914	50.9
환경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53.5	2,000	0.0
노동부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사업	49.3	6,673	95.5
국토해양부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40.6	32,121	100.0
	국지도 내각-오남(경기도)	55.7	4,101	67.1
	혼잡도로 유등천좌안도로(대전광역시)	15.2	2,500	41.8
	주거환경개선사업	57.2	110,256	66.1

주: 음영으로 표시된 사업은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0%미만인 사업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표 5]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 집행률(7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2008 집행률	2009 예산액	7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금융위원회	금융구조조정 지원사업	9.6	765,718	16.5
기획재정부	수도권내륙 화물기지 건설지원	0.0	1,000	0.0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건설	0.0	1,000	100.0
조달청	인천지방청사 신축	6.3	6,064	54.9
통일부	인적왕래 지원	45.4	1,700	0.0
	사회문화교류 지원	33.5	7,000	30.9
	인도적지원	22.3	801,320	0.5
	남북경제교류협력 지원	0.0	10,000	0.0
	경제분야협력 기반조성	38.1	113,665	15.9
	교역경험자금대출	36.0	35,250	30.4
	경제분야협력 기반조성(용자)	9.2	141,700	3.8
교육과학 기술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68.0	121,000	35.8
농림수산 식품부	어촌종합 개발사업(보조)	49.2	18,082	60.0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보조)	58.6	9,284	59.0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보조)	34.5	97,390	49.8
	어린이병원건립 및 기능강화(보조)	33.0	6,000	100.0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보조)	46.2	62,503	17.5
	노인치매병원확충(보조)	41.7	1,032	50.0
	국립청소년 우주체험센터	67.3	10,200	55.5
노동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74.9	126,541	33.8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0.1	2,941	0.4
	교대제전환 지원	52.6	6,112	14.9
	전직지원장려금	76.6	2,800	35.5
	요양비대부사업(보조)	0.0	2,500	12.0
국토해양부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보조)	7.6~54.3	140,000	77.7
	대구지하철3호선건설(보조)	51.6	55,000	77.4
	부산신항서권부두개발	11.4	31,826	0.2
	하천재해예방(보조)	82.8	689,000	67.7

주: 1. 음영으로 표시된 사업은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0%미만인 사업을 의미함.

2. 보조사업의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나.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사업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 164개 중 2009년 상반기 집행계획을 설정한 사업은 총 138개 사업이며, 그 중 68개 사업이 6월말 현재 집행률이 상반기 집행계획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원회의 금융구조조정지원 사업,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수입양곡대사업과 연근해어업감척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사업, 노동부의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사업 등 68개 사업임

[표 6]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직접사업)의 상반기 집행계획(비율)과 예산액 대비 집행률(6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2009 예산액	상반기 집행계획 (비율)	예산액 대비 상반기 집행률
국가보훈처	수업료 등 국비보전	3,384	51.0	45.1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447	74.2	29.8
	카르텔 유발 환경개선	128	131.7	82.8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220	116.6	43.6
	국가회계제도 운영	600	13.3	12.7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구활동	35	68.6	0.0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	273	38.0	29.3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0	70.0	20.3
국세청	공부징취비	250	50.0	22.0
	토지 및 주택조사 지원	260	100.0	22.3
	부산지방국세청	4,900	100.0	169.1*
조달청	공사원가관리 시스템 운영	1,400	60.7	46.8
	부산비축기지이전	4,376	6.4	8.0
통계청	경제센서스	59	94.9	76.3
통일부	남북회담행사	1,500	60.2	4.7
국방부	의무시설 개선	15,346	43.0	74.4
	군수지원	165,600	43.0	49.7
	시설부지 지원	24,881	43.0	36.7
	병영문화 개선	8,184	43.0	136.4*
	연합토지관리 계획사업	22,653	43.0	7.0
	훈련장사업	3,436	38.9	117.1*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2009 예산액	상반기 집행계획 (비율)	예산액 대비 상반기 집행률
	도하시추대대 이전사업	45,219	51.5	23.9
	무건리훈련장	75,305	53.5	35.9
	사유재산정리	30,793	37.1	32.8
	복지시설 확보사업	34,143	19.3	46.6
	교육 지원	1,257	43.0	39.2
방위사업청	제주해군기지	36,011	28.0	26.6
	활주로재포장	10,104	48.0	124.3*
	북부전투사령부	11,121	44.0	102.4*
	방위산업이차보전	4,320	50.0	16.0
행정안전부	지자체재정분석 및 재정제도개선	750	38.3	42.4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강화	1,136	58.0	42.8
경찰청	운전면허시설취득	916	75.0	72.2
소방방재청	지역별안전도 진단	150	26.6	26.7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청사이전 신축사업	8,472	44.0	44.1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30,000	3.3	11.2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5,000	100.0	16.3
	유통환경개선용자	4,000	87.5	36.3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	3,000	66.7	40.0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지원	4,000	75.0	0.0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건립	4,000	62.5	61.0
	구서올역사 관광자원화	5,000	55.0	18.4
	경정훈련원 건립	5,448	32.9	32.5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8,314	16.8	47.3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준제정	720	49.6
농림수산 식품부	부정축산물단속	48	60.0	23.8
	생산이력제 도입	1,800	100.0	85.7
	수입양곡대**	348,459	75.8	75.2
	노후원양어선대체 지원	4,000	50.0	60.0
산림청	사방사업	31,401	40.0	91.3
	산림재해복구 지원(용자금)	1,800	27.8	4.1
	산림재해복구 지원(보상비 등)	3,200	56.3	0.0
특허청	특허소송 수행사업	178	74.2	74.2
보건복지 가족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사업	102,049	33	36.5
	국립재활원병상 확충사업	17,664	100.0	33.7
	우수한약육성 지원	460	70.0	77.4
환경부	에코시티모델 시범사업	930	50.0	68.3
	환경무역대응대책추진	1,026	79.1	51.8
노동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3,456	50.0	36.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1,490	77.5	81.5
	종합직업체험관신축	11,513	97.5	16.2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1,118	60.1	68.8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2009 예산액	상반기 집행계획 (비율)	예산액 대비 상반기 집행률
	민간취업기관 지원	12,075	70.0	38.1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3,800	60.0	13.3
국토해양부	용산공원 조성사업	1,875	18.7	8.8
	종합물류정보망	1,580	0.6	56.4
	물류기업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2,000	20.0	36.5
	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조성	1,000	80.0	49.1
	인천남항건설	9,150	59.5	74.9
	주거환경개선(기금)	10,000	40.0	12.8
	오염해역준설사업	4,600	80.0	88.6
해양경찰청	방제정건조	3,983	20.0	40.3

주: 1. 상반기 집행계획(비율)은 2009년 예산액 대비 각 부처가 연초에 설정한 상반기 집행계획액의 비율을 나타냄.

2. 예산액 대비 상반기 집행률은 2009년 예산액 대비 2009년 6월말 현재 집행액의 비율을 의미함.

3. 음영으로 표시된 사업은 상반기집행계획에 비해 예산액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의미함.

4. *은 전년 이월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크고, 집행액 또한 당초 예산액보다 많은 경우임.

5. **로 표시된 사업은 2009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이며, 동 사업의 2009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표 7]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보조사업)의 상반기 집행계획(비율)과 예산액 대비 교부율(6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2009 예산액	상반기 집행계획(비율)	예산액 대비 상반기 교부율
국가보훈처	안중근의사 기념관건립	2,646	100.0	100.0
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	29,700	100.0	102.3*
문화체육관광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4,000	100.0	100.0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5,000	100.0	100.0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	4,298	70.0	79.0
	공립박물관건립사업	15,522	52.0	90.0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2,337	20.3	14.3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34,195	62.9	85.0
	문화관광자원 개발	154,857	51.0	60.5
	생태녹색관광 개발	28,190	51.0	74.0
	남해안 관광벨트	16,459	38.0	39.9
	유교문화관광 개발사업	27,260	70.0	68.7
	관광지 개발(제주)	1,867	63.0	62.5
	생활체육공원 조성	10,553	61.6	109.5*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	1,505	66.7	100.0
	육상진흥센터 지원(대구시)	9,000	13.0	0.0
방송통신위원회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 조성(한국관광공사)	600	75.0	18.5
	쌍무간방송협력협정 이행사업	1,993	77.0	77.2
문화재청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촉진	950	70.0	57.3
	문화재보수 정비(총액사업)**	201,026	52.6	92.7
	유교문화관광자원화	5,213	63.6	55.6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5,705	64.9	57.8
	지역문화유산 개발	11,760	79.1	83.4
농림수산식품부	무형문화재전수 지원사업	7,330	100.0	79.2
	노량진수산물시장 건립사업 수협중앙회	10,000	2.1	25.5
	유통협약, 명령제 지원	5,349	51.4	0.0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67,647	0.0	0.0
	농작물재해재보험금	23,000	0.0	0.0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1,835	61.3	61.3
	친환경양식기반 구축	1,900	100.0	100.0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2,700	100.0	100.0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129,800	70.1	3.4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25,550	80.4	78.4
지식경제부	어업자원서식지조사	54,559	100.0	100.0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	15,440	2.0	46.7
	갈사만진입도로3호선(경남)	2,000	70.0	3.0
	의곡-부산과학산단간도로(경남)	17,000	70.0	61.2
	기타기반시설 지원	106,635	70.0	75.5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2009 예산액	상반기 집행계획 (비율)	예산액 대비 상반기 교부율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전주시)	900	100.0	100.0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구미시	2,090	100.0	100.0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익산시)	1,500	100.0	100.0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제주 포함)	174,914	60.0	74.2
환경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2,000	100.0	100.0
노동부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사업	6,673	21.6	0.0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32,121	59.0	52.4
국토해양부	국지도 내각-오남(경기도)	4,101	60.0	249.6*
	혼잡도로 유등천좌안도로(대전광역시)	2,500	100.0	100.0
	주거환경개선사업	110,256	65.1	70.0

- 주: 1. 상반기 집행계획(비율)은 2009년 예산액 대비 각 부처가 연초에 설정한 상반기 집행계획액의 비율을 나타냄.
2. 예산액 대비 상반기 교부율은 2009년 예산액 대비 2009년 6월말 현재 교부액의 비율을 의미함.
3. 음영으로 표시된 사업은 상반기집행계획에 비해 예산액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의미함.
4. *은 전년 이월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크고, 집행액 또한 당초 예산액보다 많은 경우임
5. **로 표시된 사업은 2009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이며, 동 사업의 2009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표 8]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상반기 집행계획(비율)과 예산액 대비 집행률(6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2009 예산액	상반기 집행계획(비율)	예산액 대비 상반기 집행률
금융위원회	금융구조조정지원사업	765,718	71.4	16.5
조달청	인천지방청사 신축	6,064	100.0	107.1*
교육과학기술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121,000	100.0	35.8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종합개발사업(보조)	18,082	54.8	67.4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보조)	9,284	54.8	91.9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보조)	97,390	60.0	71.5
	어린이병원건립 및 기능강화(보조)	6,000	100.0	100.0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보조)	62,503	100.0	100.0
	노인지매병원확충(보조)	1,032	100.0	100.0
	국립청소년 우주체험센터	10,200	80.0	89.0
노동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15,056	60.0	32.1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2,941	50.0	0.4
	교대제전환지원	6,112	60.0	13.0
	전직지원장려금	2,800	60.0	29.4
	요양비대부사업(보조)	2,500	50.0	4.0
국토해양부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보조)	140,000	70.0	70.0
	대구지하철3호선건설(보조)	55,000	63.9	82.2
	하천재해예방(보조)**	509,000	65.0	69.5

주: 1. 상반기 집행계획(비율)은 2009년 예산액 대비 각 부처가 연초에 설정한 상반기 집행계획액의 비율을 나타냄.

2. 예산액 대비 상반기 집행률은 2009년 예산액 대비 2009년 6월말 현재 집행액의 비율을 의미함.

3. 음영으로 표시된 사업은 상반기집행계획에 비해 예산액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의미함.

4. 보조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중앙정부의 보조기관에 대한 교부액 집행률을 의미함.

5. *은 전년 이월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크고, 집행액 또한 당초 예산액보다 많은 경우임.

6. **로 표시된 사업들은 2009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이며, 동 사업들의 2009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다. 2009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집행실적 부진사업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기타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2009년 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등 5개 사업
- 노동부의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의 경우 2009년 7월말 현재 집행률이 각각 21.4%로 저조함

[표 9]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기타부진사업 중 추경편성 사업의 집행실적(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2009 당초 예산액	2009 추경	예산현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보조)	201,026	10,000	318,499	54.7
농림수산 식품부	수입양곡대	348,459	13,875	639,638	41.0
노동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15,056	11,505	126,561	33.8
	신용보증대위변제	8,722	9,060	17,782	21.4
국토해양부	하천재해예방(보조)	509,000	180,000	475,673	67.7

주: 1. 음영으로 표시된 사업은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0%미만인 사업을 의미함.

2.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현액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보조사업자 예산현액과 실적행률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담당] 한정수 분석관(788-4632)

⑥ 실업급여비 지출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가. 경기 회복 하에서도 고용위기 지속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정
- 취업자 수: 2009. 8월 2,362만명으로 6월 이후 다시 감소
 - 취업자 수 감소는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현저히 발생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감소 폭이 크며, 연령별·성별로는 30대 남성 취업자 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짐
- 공식 실업률은 3.7%(2009. 8)로 전년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2009. 1~8월간 평균 실업자 수는 93만명으로, 2008년 전년동기(78만명) 대비 19.2% 증가
 - 2009. 6월 이후 실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를 포함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를 실질 실업자로 파악한 중위의 체감 실업률은 6.1%, ‘그냥 쉬었음’을 포함한 광위의 체감실업률은 11.0%(현대경제연구원)
 - 청년실업률 : 7.6%(2008. 12) → 8.8%(2009. 3) → 7.0%(2009. 5) → 8.2%(2009. 8)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만명, %)

	2008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5세 이상 인구 (A)	3,960	3,986	3,990	3,994	3,998	4,003	4,008	4,013	4,017
• 경제활동인구 (B)	2,435	2,371	2,367	2,406	2,446	2,466	2,493	2,476	2,453
(경제활동참가율: B/A)	61.5	59.5	59.3	60.2	61.2	61.6	62.2	61.7	61.1
비경제활동인구	1,525	1,616	1,623	1,588	1,552	1,537	1,515	1,537	1,564
• 취업자 수 (C)	2,358	2,286	2,274	2,311	2,352	2,372	2,397	2,383	2,362
- 전년(동월)대비 증가	14.4	-10.3	-14.2	-19.5	-18.7	-21.9	0.4	-7.5	0.3
· 임시·일용직	-15.0	-26.6	-27.3	-19.4	-23.8	-22.8	5.0	-10.2	1.0
· 자영업주	-7.9	-11.2	-25.6	-22.2	-26.9	-30.1	-28.7	-22.8	27.5
· 남 성	9.6	-1.9	-0.2	-4.6	-1.3	-0.8	9.5	-0.3	0.7
30대 남성	-0.3	-2.6	-0.9	-5.6	-7.1	-6.5	-7.1	-11.3	-10.0
· 여 성	4.8	-8.4	-14.0	-14.9	-17.4	-21.1	-9.1	-7.3	-0.5
• 실업자 수 (D)	77	85	92	95	93	94	96	93	91
- 고용률 (C/A)	59.5	57.3	57.0	57.9	58.8	59.3	59.8	59.4	58.8
· 청년고용률	41.6	40.5	39.9	39.4	40.6	41.3	41.2	41.8	40.6
- 실업률 (D/B)	3.2	3.6	3.9	4.0	3.8	3.8	3.9	3.7	3.7
· 청년실업률	7.2	8.2	8.7	8.8	8.0	7.6	8.4	8.5	8.2

- 주: 1. 15세 이상 인구: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B/A): 남 73.3%, 여 49.3%, 성별 취업자 구성: 남 58.4%, 여 41.6%(2009. 8).
 3.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64.4만명, 그냥 쉬는 사람 145.2만명, 구직단념자 17.8만명으로 합계 227.4만명(2009. 8).
 4. 청년층은 15~29세.

자료: 통계청.

나. 2009. 1~8월간 실업급여비 지출 현황

□ 2009. 1~8월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2008년 연간 지급액(2조 8,653억원) 대비 99.7%인 2조 8,557억원에 달하고, 사업비(추경기준) 대비 집행률은 58.7%

- 수급자 수는 2008년 연간 수급자 수(99만명) 보다 많은 100.5만명으로, 1995년 실업급여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100만명 돌파하였으며, 신규 신청자 수(76.6만명)도 2008년 연간 신청자 수의 91.3%에 달함

- 2009년도 실업급여 사업비(추경기준)는 전년대비 69.9% 증가한 4조 8,648억원으로 고용보험기금 총 사업비(7조 8,129억원) 대비 62.3% 비중
- 사업비는 추경을 통하여 당초계획(3조 3,265억원) 대비 46.2%(1조 5,383억원) 증액⁵⁾

[표 2] 실업급여 사업비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안)
		당초계획 (A)	추 경 (B)	증감액 (B-A)	1~8월간 지출액(C)	집행률 (C/B)	
구직급여	24,731	29,272	37,927	8,655	25,018	66.0	33,660
취업촉진수당	3,917	3,976	3,976	-	3,493	87.9	1,562
연장급여	5	17	6,745	6,728	46	0.7	-
합 계	28,653	33,265	48,648	15,383	28,557	58.7	35,222

주: 2008년까지는 결산, 2010년은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자료: 노동부.

[표 3] 연도별 실업급여 신청자 수 · 수급자 수 · 지급액 추이: 2004~2009. 8

(단위: 만명,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8
신규 신청자 수	47.2	56.6	61.3	68.8	83.9	76.6
수급자 수	59.0	69.7	76.7	85.4	99.0	100.5
지급액	14,483	17,520	20,740	24,340	28,653	28,557

주: 수급자 수는 주민번호 1회로만 카운트된 순 수급자 수입(동일인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 항목을 중복하여 수급했을 경우, 수급자 수는 1명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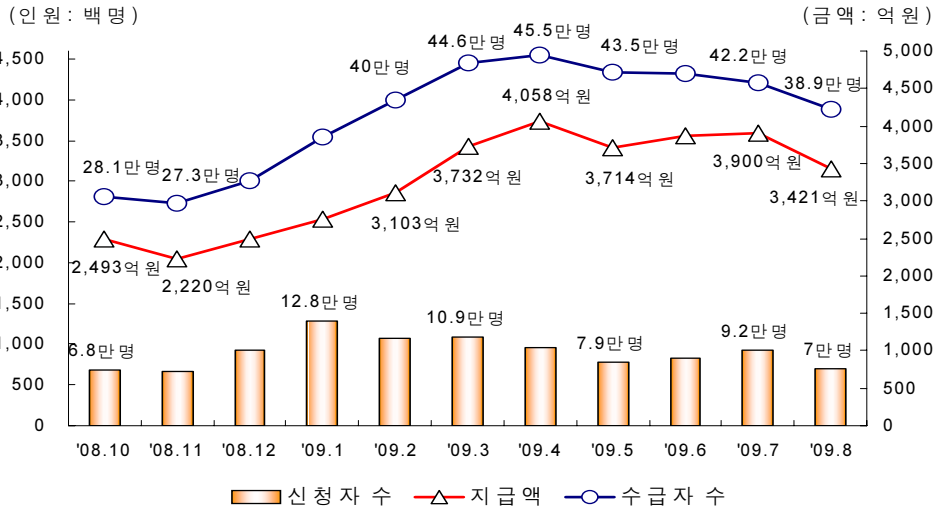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 월별 실업급여 현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위기가 시작된 2008년 하반기 이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및 수급자 수,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 4월을 정점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음

5) 2009년도 추경 신규사업인 「특별연장급여」(6,606억원)는 실업급여 증액분의 42.9% 차지.

- 노동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140만~15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월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수급자 수·지급액 추이: 2008. 10 ~ 2009. 8〉



주: 월별 수급자 수는 전월로부터 이월된 수급자 수를 중복하여 포함.

자료: 노동부.

2. 주요 쟁점

가. 실업급여계정 당기수지 적자의 확대

□ 2009. 8월말 현재 실업급여계정⁶⁾ 당기수지 적자는 2008년 (3,661억 원) 보다 많은 5,502억 원으로, 누적적립금은 4조 5,165억 원

- 2009. 8월말 현재 당기수지 적자는 2008년 대비 1.5배 수준이며, 2009년 도 전망치의 23.2%

6)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과 실업급여계정의 2개 계정을 운용하며, 실업급여계정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와 '모성보호급여'(산전후휴가급여, 육아 휴직급여)로 구성됨.

- 2009. 8월말 현재 실업급여계정 수입은 2009년도 계획대비 90.1%로 향후 수입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⁷⁾ 지출액은 2009. 1~8월간 수급자 수 추이를 감안할 때 연도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09년도 실업급여계정 당기수지 적자는 추경당시 전망치(2조 3,764억원)보다는 적지만,⁸⁾ 연도말까지 지출액 증가가 수입증가를 상회함으로써 2009. 8월말 현재 당기수지 적자(5,502억원)보다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 누적적립금(4조 5,165억원)도 당기수지 적자 증가폭만큼 감소할 것임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므로, 급여비 지출 급증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고용보험 재정 운용 대책을 강구할 필요 있음

- 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3,976억원)의 경우, 구직급여 자체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급여항목간 중복 혜택의 제공이라는 논란이 있으며, 이미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만큼, 지급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⁹⁾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수반 필요

7) 고용보험료 수입은 대부분 1분기에 수납됨.

8) 2009년도 추경당시 동 계정 당기수지 적자는 전년의 6.5배인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2009. 4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의 완만한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추경당시 전망치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특히, 추경 신규사업인 「특별연장급여」(6,606억원)의 경우,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동 급여비 지급을 위한 중대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경 당시 당기수지 적자 예상치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9) 200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1.9만명, 부정수급액은 86억원에 달함.

[표 4]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추이: 2004~2009년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수지차	누적적립금
2006	25,412	22,843	2,569	55,397
2007	26,063	27,132	-1,069	54,328
2008	28,629	32,290	-3,661	50,667
2009. 1~8	26,299	31,801	-5,502	45,165
2009	29,185	52,949	-23,764	26,903

주: 1. 2009. 8월까지의 실적기준, 2009년은 계획기준(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

2. 수입과 지출은 공자기금 회수 및 운용액이 미포함된 금액임

3. 지출은 운영비와 반환금 포함

자료: 노동부

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미흡

□ 총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비중은 41.1%(979만명)에 불과하고,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그리고 상당수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58.9%(1,404만명)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2009. 7)

- 자영업자 수: 2009. 7월 58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8만명 감소
- 임시·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31.0%, 4.4%에 불과(통계청, 2009. 3)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특수형태 근로자 포함)은 57.9%이며, 이 중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39.1%로 정규직(67.3%)보다 28.2%p 낮음(통계청, 2009. 3)
- 영세 사업장 가입률: 1~4인 사업장 23.4%, 5~9인 사업장 49.2%

-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상태에 처해있는 ‘근로빈곤층’(working-poor)은 2008년 194.7만명에서 2009년 상반기 208.6만명으로 급증했지만,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는 이들 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여 실직이나 근로능력 상실 등의 위기가 닥치면 곧바로 절대빈곤층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¹⁰⁾
- 2009. 1~7월 중 실업급여 수혜율(실업자 수 대비 수혜자 수 비중)은 전년대비 1.8%p 증가한 43.6%에 불과
-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2006년 전체 실직자의 수혜율은 9.4%, 고용보험가입에 가입한 실직자의 수혜율은 21.7%에 불과(노동부, 「2008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 필요
- 경기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고용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장기실업자와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¹¹⁾ 도입 검토 필요

10) 김태완, 「근로빈곤층 실태조사」, 「워킹 푸어의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9.

11) 저소득층이면서 고용보험(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실업자와 고용보험 가입 무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직노력과 직업훈련 이행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

● 부 록

[부표 1] 실업급여제도 개요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구 직 급 여	구 직 급 여	소정 급여 일수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급여기초 임금일액	이직전 평균임금의 50% (하한: 최저임금일액의 90%, 상한:40,000원)						
	연 장 급 여	훈련연장급여	-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훈련기간 : 최대 2년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지급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 등의 중대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6개월) 내에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 는 자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지급						
상 병 급 여	-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취 업 촉 진 수 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부표 2] 실업급여 항목별 수급자 수 및 지급액 추이: 2004~2009. 8

(단위: 명,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8
① 구직급여						
수급자 수	581,175	685,634	767,314	838,704	961,607	979,738
지급액	13,333	16,085	18,391	21,226	24,731	25,018
② 취업촉진수당						
수급자 수	81,662	100,377	121,770	148,246	175,028	149,276
지급액	1,149	1,433	2,342	3,105	3,917	3,493
③ 연장급여						
수급자 수	158	269	563	652	268	3,334
지급액	2	3	7	9	5	46
[실업급여 전체]						
수급자 수	589,611	696,544	767,314	854,400	990,061	1,005,117
지급액	14,483	17,520	20,740	24,340	28,653	28,557

주: 1. 수급자 수는 주민번호 1회로만 카운트된 순 수급자 수임(동일인이 각 급여항목간 중복하여 수급했을 경우, 수급자 수는 1명으로 간주).

2. 각 급여항목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수급자 수는 각 급여항목 수급자 수의 단순 합계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노동부.

[부표 3]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15세 이상 인구 4,013만명					
비경제활동인구 1,537만명		경제활동인구 2,476만명			
		실업자 93만명	취업자 2,383만명(100.0%)		
		비임금근로자 724만명(30.48%)		임금근로자 1,659만명(69.6%)	
		자영업자 583만명 (24.5%)	무급가족 종사자 141만명 (5.9%)	임시· 일용직 721만명 (30.2%)	상용직 983만명 (39.4%)
고용보험 제외 1,630만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1,404만명 (58.9%)			고용보험 피보험자 979만명 (41.1%)

주: 2009. 7월 기준임.

자료: 1. 통계청, 「2009. 7월 고용동향」, 2009. 8.

2. 한국고용정보원, 「2009. 7월 고용보험통계현황」, 2009. 8.

[부표 4]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2004. 8~2009. 3

(단위: %)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3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81.6	83.0	84.1	84.1	83.5	83.8
임시직	25.8	26.8	27.6	26.7	29.1	31.0
일용직	3.5	2.8	2.9	2.9	4.6	4.4
[고용형태별]						
정규직	61.5	63.8	64.7	64.3	65.8	67.3
비정규직	36.1	34.5	36.3	39.2	39.2	39.1
- 한시직	45.5	45.2	49.0	55.5	56.0	57.2
- 시간제	3.6	2.2	3.2	3.7	6.3	7.3
- 비전형	25.2	22.0	20.8	23.9	25.8	26.1
[사업체 규모별]						
1 ~ 4인	9.2	15.1	18.8	20.5	22.7	23.4
5 ~ 9인	41.1	41.1	43.9	45.6	47.9	49.2
10 ~ 29인	57.8	58.2	59.2	61.5	63.8	64.1
30 ~ 99인	66.7	66.2	66.8	66.1	66.9	68.6
100 ~ 299인	77.4	76.6	78.3	78.5	79.0	78.5
300인 이상	79.7	80.7	81.1	79.7	78.0	78.4
	52.1	53.1	54.6	55.3	56.8	57.9

주: 특수형태 근로자 포함(‘특수형태 근로자’란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송차주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부표 5] 실업급여 수혜율

(단위: 천명, %)

	실업자 수	실업급여 수혜자 수	수혜율
2004	860	173	20.1
2005	887	203	22.9
2006	827	221	26.8
2007	783	243	31.0
2008	769	272	35.4
2009.1~7	926	404	43.6

주: 수혜율= 수혜자 수 ÷ 실업자 수(연평균과 2009. 1~7월간 평균 실업자 수이며, 수혜자 수는 실업급여 항목간 중복수급을 제외한 평균 수급자 수).

자료: 노동부.

[담당] 이진우 분석관(788-4638)

㉚ 희망근로사업 집행실태 분석

1. 현 황

- ‘희망근로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
- 사업기간 : '09.6~11월(6개월)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246개)
- 사업규모 : 총 25만명
- 총 사업비 : 1조 7,070억원 (국비 1조 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
-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

2. 쟁점사항

가. 일부 대상 사업 부적정

-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에 따르면, 희망근로 인력이 수행하는 사업은 실체가 남는 생산적 사업 위주로 발굴하도록 하고, 새로운 행정업무가 아닌 기존 업무의 단순인력 지원,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단순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며, 주·정차 단속과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는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수행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거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순회감시 및 지도하는 등 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처럼 희망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며, 사업종료 후 효과가 지속되는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지역별 배분기준 불합리

- 희망근로 사업의 시·도별 사업비는 실업자수와 비경제활동인구수에 따라 40%, 인구수에 따라 30%,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30%를 배분하였음.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과 희망근로 사업비 배분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고,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수요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아니더라도 실업자 수와 비경제활동인구 수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음.

- 향후 희망근로 사업이 지속된다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보다는 희망근로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계획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다. 중도포기자 과다

-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당초 선발한 대상은 30만 9,790명이었으나, 7월 말 기준으로 17.7%인 5만 4,846명이 중도에 포기하여, 사업시행 초기임에도 중도포기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중도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업무형태 불만 및 근무환경 불만으로 인한 중도포기자가 전체 중도포기자의 19%에 이르고 있는바, 근로능력, 희망일자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도포기인원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선발 인원 71,797명 중 23.7%인 16,986명이 포기하여 중도포기인원이 가장 많으면서 중도포기율도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대전, 울산 등의 중도포기율이 20% 이상이었음

[표 1]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도포기인원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시도별	총선발 인원 (A+B)	현재 참여인원 (A)	중도 포기인원 (B)	중도 포기율 (B/A+B)	중도포기자 사유별 현황							
					근무환경 불만	업무형태 불만	임금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등	농사 등 현업	개인 사정	
경기	71,797	54,811	16,986	23.7	2,061	2,290	752	1,667	998	200	9,018	
인천	16,992	13,288	3,704	21.8	197	405	338	130	263	31	2,340	
대전	9,202	7,278	1,924	20.9	46	130	114	314	251	0	1,069	
울산	7,011	5,551	1,460	20.8	203	197	215	249	148	75	373	
서울	58,924	47,819	11,451	19.4	1,068	1,445	956	1,062	1,438	119	5,363	
광주	9,297	7,500	1,797	19.3	164	200	92	168	134	58	981	
충북	9,020	7,483	1,537	17.0	52	38	106	389	247	95	610	
부산	24,137	20,438	3,699	15.3	193	177	211	541	528	38	2,011	
제주	3,467	2,936	531	15.3	25	31	34	36	13	19	373	
전남	12,207	10,425	1,782	14.6	129	62	40	206	66	310	969	
전북	13,095	11,268	1,857	14.2	156	97	39	185	131	222	1,027	
대구	15,747	13,529	2,218	14.1	245	188	210	246	167	45	1,117	
강원	9,798	8,415	1,375	14.0	31	22	137	104	172	129	780	
충남	14,687	12,645	2,042	13.9	193	172	301	289	62	97	928	
경남	19,726	18,087	1,639	8.3	85	153	100	287	233	138	643	
경북	14,683	13,839	844	5.7	10	32	30	156	140	26	450	
총계	309,790	255,312	54,846	17.7	4,858	5,639	3,675	6,029	4,991	1,602	28,052	

자료: 행정안전부

라. 상품권 지급의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 미흡

- 국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총 급여 중 상품권의 지급비율은 최저 30% 이상, 최고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상품권 지급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 8월 20일 현재까지 상품권 누적발행액은 1,264억 1,500만원이며, 이 중 69.3%인 875억 8,100만원이 회수되었음. 총 급여 지급액 대비 상품권 발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최저 지급비율인 30%만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음. 이처럼 상품권 지급 비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공공요금이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지급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대부분 지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충북은 전체 발행금액 중 19.7%를, 전북은 10.2%를 공무원 등이 사주었음. 이러한 운동이 자발적이라고는 하나, 상품권 사용의 부담을 공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행안부는 당초 상품권 할인(깡)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교환 상인들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상품권 교환 금액을 대장에 기입하여 월 단위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후 가맹점 가입 촉진을 위해 국세청 통보 조치를 잠정 보류하도록 하였는바, 상품권 할인(깡)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방지대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마. 지원대상 중 노령자 및 주부 과다

- 7월 말 기준으로 희망근로 지원대상자의 연령대별 선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원 중 47.4%가 60대 이상¹²⁾이며, 70대 이상도 13.8%를 차지하고 있음. 전남의 경우 전체 선발인원 중 65.6%가 60대 이상이었음.

12) 정부는 노령인구 기준을 65세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65세 이상의 비율은 30%임

- 희망근로 지원대상자의 전(前)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부가 22.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¹³⁾. 충북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30.1%가 전직 주부였음
- 지원대상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주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에 따라,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려는 사업취지와 달리 소위 ‘용돈벌이’ 형태로 사업 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 희망근로 사업 연령대별 선발 현황(7월 말 기준)

(단위: 명, %)

지역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전체 인원 중 60세 이상 비율
서울	262	1,544	4,282	8,235	12,662	16,613	6,612	46.2
부산	37	598	1,593	3,583	6,722	6,653	1,351	38.9
대구	45	672	1,724	3,102	4,286	2,890	844	27.5
인천	51	421	1,046	2,535	3,353	4,080	1,820	44.3
광주	17	305	775	1,251	1,878	2,231	1,043	43.6
대전	26	213	565	1,179	1,785	2,582	1,060	49.1
울산	15	213	512	1,105	1,412	1,705	574	41.1
경기	182	1,758	5,019	10,570	13,324	17,048	8,334	45.1
강원	9	203	483	1,032	1,964	3,623	1,320	57.2
충북	21	278	561	1,066	1,728	2,774	1,163	51.8
충남	33	339	717	1,481	2,792	5,066	2,622	58.9
전북	26	357	723	1,482	2,731	4,955	2,395	58.0
전남	9	204	491	948	1,926	4,762	2,065	65.6
경북	33	345	941	1,616	3,257	5,141	2,431	55.0
경남	34	508	1,323	2,661	4,462	6,738	2,057	49.4
제주	32	334	230	400	576	838	577	47.3
계	832	8,292	20,985	42,246	64,858	87,699	36,268	47.4

자료: 행정안전부.

13) 정부는 이에 대해 실직가장을 대신한 주부 참여자도 상당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표 3] 희망근로 선발자 前 직업별 현황(7월말 기준)

(단위: 명, %)

지역	자영업	회사원	일용근로	제조 서비스업	학생	농림 수산	주부	노숙자	기타
서울	3,756 (7.5)	4,491 (8.9)	9,343 (18.6)	4,574 (9.1)	1,675 (3.3)	540 (1.1)	9,424 (18.8)	240 (0.5)	16,168 (32.2)
부산	2,013 (9.8)	1,836 (8.9)	6,007 (29.2)	2,453 (11.9)	333 (1.6)	405 (2.0)	3,560 (17.3)	75 (0.4)	3,855 (18.8)
대구	835 (6.2)	1,285 (9.5)	2,964 (21.9)	2,088 (15.4)	223 (1.6)	110 (0.8)	2,294 (16.9)	12 (0.1)	3,752 (27.7)
인천	819 (6.2)	1,681 (12.6)	2,272 (17.1)	762 (5.7)	274 (2.1)	555 (4.2)	2,830 (21.3)	0 (0.0)	4,113 (30.9)
광주	453 (6.0)	684 (9.1)	1,275 (17.0)	382 (5.1)	107 (1.4)	588 (7.8)	1,670 (22.3)	0 (0.0)	2,341 (31.2)
대전	636 (8.6)	915 (12.3)	1,273 (17.2)	629 (8.5)	114 (1.5)	172 (2.3)	1,632 (22.0)	29 (0.4)	2,016 (27.2)
울산	451 (8.1)	587 (10.6)	1,256 (22.7)	511 (9.2)	61 (1.1)	389 (7.0)	1,514 (27.3)	0 (0.0)	767 (13.9)
경기	3,071 (5.5)	4,189 (7.4)	8,888 (15.8)	3,858 (6.9)	1,052 (1.9)	2,790 (5.0)	13,570 (24.1)	17 (0.0)	18,800 (33.4)
강원	598 (6.9)	379 (4.4)	1,231 (14.3)	464 (5.4)	182 (2.1)	1,383 (16.0)	2,299 (26.6)	120 (1.4)	1,978 (22.9)
충북	651 (8.6)	383 (5.0)	2,503 (33.0)	226 (3.0)	130 (1.7)	840 (11.1)	2,288 (30.1)	0 (0.0)	570 (7.5)
충남	366 (2.8)	338 (2.6)	2,566 (19.7)	530 (4.1)	181 (1.4)	5,095 (39.0)	2,749 (21.1)	0 (0.0)	1,225 (9.4)
전북	969 (7.6)	589 (4.6)	2,476 (19.5)	205 (1.6)	116 (0.9)	2,841 (22.4)	3,410 (26.9)	0 (0.0)	2,063 (16.3)
전남	378 (3.6)	326 (3.1)	1,555 (14.8)	233 (2.2)	144 (1.4)	3,197 (30.5)	3,056 (29.1)	64 (0.6)	1,532 (14.6)
경북	478 (3.5)	1,298 (9.4)	2,901 (21.1)	649 (4.7)	240 (1.7)	2,257 (16.4)	2,624 (19.1)	0 (0.0)	3,317 (24.1)
경남	967 (5.4)	1,120 (6.3)	3,939 (22.2)	1,093 (6.1)	293 (1.6)	2,873 (16.2)	4,711 (26.5)	4 (0.0)	2,783 (15.6)
제주	128 (4.3)	83 (2.8)	342 (11.4)	304 (10.2)	382 (12.8)	614 (20.6)	358 (12.0)	0 (0.0)	776 (26.0)
계	16,569 (6.3)	20,184 (7.7)	50,791 (19.4)	18,961 (7.3)	5,507 (2.1)	24,649 (9.4)	57,989 (22.2)	561 (0.2)	66,056 (25.3)

자료: 행정안전부.

바. 일부 지자체의 사업중단 문제

- 단순 취로사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희망근로 참가자들의 부당해고 논란 야기¹⁴⁾
 -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8월에 23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약 500명의 희망근로 참가자가 집단 해고를 당했고, 9월 말에 4개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므로 약 200명이 추가로 해고될 것으로 보임
 - 생산적 사업 위주로 희망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취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이를 중단하여 부당해고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음

사. 안전사고 발생 문제

-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사고로 인해 사망 23명, 중상자 209명, 경상자 968명 등 1,200명의 인명피해 발생¹⁵⁾
 - 경기도 333명, 서울 139명, 대구 89명, 인천 87명 등 인명피해 발생
- 희망근로 참가자 중 60대 이상이 47.4%임을 감안할 때 안전대책 강화 필요

[담당] 오세일 분석관(788-4640)

14) 2009. 9. 22 홍희덕 의원 보도자료 참고.

15) 2009. 9. 23 문화일보 「‘희망근로’ 안전사고 빈발 석달간 인명피해 1,200명」 기사 참고.

Ⅷ 중소기업 신용보증 현황 및 정책방향

1. 현 황

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증액

-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 확대를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대폭 증액
- 7월말까지 신보에 1조 4,670억원, 기보에 4,730억원의 정부출연금 지급
 - 당초 예산에 편성된 정부출연금(신보 9,000억원, 기보 2,000억원)은 1~2월에 전액 지급
 - 추경으로 증액된 정부출연금은 6월에 일부 지급(신보 5,670억원, 기보 2,730억원)

[표 1] 정부출연금 지급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예산	결산	예산		집행(7월말)	
			당초	추경	지급액	지급률
신보	1,000	925	9,000	19,800	14,670	74.1
기보	1,700	1,575	2,000	7,200	4,730	65.7

주: 8월에 신보에 2,903억원, 기보에 1,397.5억원의 정부출연금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잔여액은 9월에 지급.

나. 7월말 현재 보증잔액은 신보 45조 7,862억원, 기보 16조 6,164억원

□ 2009년 말의 보증잔액 목표는 신보 54조 6,000억원, 기보 17조 1,000억원임

- 목표를 달성하려면 2008년 말에 비하여 신보는 22조 8,616억원, 기보는 4조 5,254억원의 보증잔액 증가가 필요
- 2009년 7월 말까지 신보는 14조 478억원, 기보는 4조 418억원의 보증잔액 증가(전년말 대비)
- 신보는 61.4%, 기보는 89.3% 달성

[표 2] 보증공급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보증공급	신규보증	보증잔액	보증공급	신규보증	
2007년	288,581	295,924	85,027	111,874	110,897	37,418	
2008년	317,384	302,815	93,255	125,746	125,625	44,383	
2009년	1월	328,554	20,663	5,407	126,992	5,665	3,072
	2월	346,278	31,705	22,441	133,186	14,221	9,085
	3월	406,099	85,840	30,470	144,415	23,947	14,842
	4월	426,194	52,217	25,215	152,306	20,896	11,331
	5월	442,621	44,796	19,394	158,148	17,636	8,438
	6월	457,216	52,079	19,832	165,616	23,443	10,739
	7월	457,862	16,786	6,100	166,164	7,889	3,432
	소계	-	304,086	128,859	-	113,697	60,939

주: 1) 총보증 기준(재보증 제외). 다만, 신규보증은 일반보증 기준.

2) 보증잔액은 연말 또는 월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 정책방향

가. 신용보증의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 7월말 보증사고율은 신보와 기보 모두 4.8%(연간 환산치)로, 당초 전망(신보 9.6%, 기보 11.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대위변제 규모는 경제상황 악화와 보증공급 확대에 따라 증가함
 - 신용보증기금: 2007년 1조 2,838억원, 2008년 1조 5,114억원, 2009년 7월말 1조 1,332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2007년 7,046억원, 2008년 6,758억원, 2009년 7월말 5,547억원

- 보증공급의 급격한 확대가 2008년 4/4분기에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중소기업의 대출변제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중소기업의 대출 변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2010년 이후에 대위변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대비할 필요
 - 철저한 보증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보증부실을 줄이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

- 시장기능에 의해 자금유통이 가능한 우량기업 또는 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받더라도 회생하기 어렵거나 성장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저한 보증심사 필요

나.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보증정책 필요

- 신용보증은 용자방식 등에 비하여 적은 재원으로 중소기업 자금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보증한도 확대, 심사기준 완화, 부분보증비율 상향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향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보완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이 호전되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에 보증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보증한도·심사기준·부분보증비율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 특히, 경기회복에 따라 보증규모를 축소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분보증비율 재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분보증비율은 대출금액 중 보증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대출금액 중 일부만 보증하는 부분보증제도는 금융기관이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능을 통하여 부실보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임
 -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시장참여자가 부담하게 되며, 자금중개시장에 존재하는 신용위험 등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함

-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으로 각종 시장위험이 이전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시장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향후 보증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종전의 85% 수준에서 95~100%로 높아진 부분보증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

□ 공적 보증규모는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경기침체시에는 보증공급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적극지원하고,
- 경기회복시에는 보증공급규모를 축소하여 보증여력을 비축하고, 정부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

다. 부정신용보증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 부적격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보증을 받거나 보증부대출을 목적 외로 유용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신용보증 관련 기금의 근거법에는 임직원의 비밀누설 등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나, 부정신용보증 방법으로 보증공급을 받은 경우 등에 제재할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형법」의 사기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을 적용하거나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하여 제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신용보증 관련 기금의 근거법에 거짓 자료제출이나 보증부대출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

[담당] 유인규 예산분석관(788-4623)

9 중소기업 용자지원사업 집행동향 및 문제점

1. 현황

- 예 산: 5조 8,555억원, 집행률(7월말 기준): 67.4%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11개 용자사업 예산으로 5조 8,555억원 편성
 - 창업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지원, 신성장기반, 개발기술사업화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조 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09년 7월말 현재 3조 9,463억원을 집행하여 67.4%의 집행률을 보임

[표 1] 중소기업 용자지원 사업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 예산			2009년 7월말 기준	
	당초(A)	추경(B)	증감 (B-A)	집행액(C)	집행률(C/B)
창업활성화	10,000	11,500	1,500	8,244	71.7
사업전환	1,475	1,475	0	834	56.5
긴급경영안정지원	7,000	15,000	8,000	9,773	65.2
신성장기반	11,900	13,100	1,200	9,190	70.2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	3,000	3,000	0	2,096	69.9
농공단지기업지원	200	200	0	167	83.5
개발기술사업화지원	1,580	1,880	300	1,516	80.6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1,000	1,000	0	799	79.9
자산유동화	400	400	0	0	0.0
소상공인지원	5,000	10,000	5,000	6,824	68.2
폐업자영업자지원	1,000	1,000	0	20	2.0
합계	42,555	58,555	16,000	39,463	67.4

자료: 중소기업청.

2. 주요 쟁점

가. 일부 사업의 집행 부진

- 상반기 융자사업 집행률(당초계획 대비)은 78.8%로 조기집행 목표 70%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사업전환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등 일부 사업은 계획대비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등은 각각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이 94.5%와 82.8%로 나타나, 2009년 2분기 목표 집행률인 70.0%보다 집행실적이 높게 나타남
- 사업전환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은 집행률이 각각 47.6%와 1.3%로 나타나, 계획보다 저조하고, 신성장기반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상반기에 계획했던 70%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 2] 중소기업 융자사업 조기집행 목표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2009		2009년 상반기	
	당초	추경	목표비율	실집행률
창업활성화	10,000	11,500	70.0	73.2
사업전환	1,475	1,475	70.0	47.6
긴급경영안정지원	7,000	15,000	70.0	94.5
신성장기반	11,900	13,100	70.0	68.3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	3,000	3,000	70.0	59.3
농공단지기업지원	200	200	70.0	73.3
개발기술사업화지원	1,580	1,880	70.0	82.8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1,000	1,000	70.0	74.2
자산유동화	400	400	-	-
소상공인지원	5,000	10,000	70.0	129.1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	1,000	1,000	70.0	1.3
합계	42,555	58,555	70.0	78.8

주: 조기집행 목표비율과 실집행률은 '09년 당초예산 대비 목표비율과 실집행률임(추경예산 편성 이후 별도로 조기집행 목표를 수립하지 않음).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운전자금 비중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사업별 운전자금 한도를 높이고 운전자금의 비중도 60% 이상으로 높였음
 - 2006년과 2007년에 36% 정도였던 운전자금 비중은 2008년 41.6%로 늘어난데 이어 2009년 7월말에는 64.5%까지 높아짐

[표 3] 중소기업 용자사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비중 추이

(단위: 억원)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전체
2006	실적	15,189	8,743	23,932
	비중(%)	63.5	36.5	100.0
2007	실적	15,763	9,040	24,803
	비중(%)	63.6	36.4	100.0
2008	실적	15,395	10,954	26,349
	비중(%)	58.4	41.6	100.0
2009. 7	실적	11,584	21,035	32,619
	비중(%)	35.5	64.5	100.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적 및 전망 건강도지수가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 비중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적 건강도 지수¹⁶⁾:

56.7('09. 1) → 66.1('09. 3) → 77.0('09. 5) → 78.7('09. 7)

16)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적을 평가하는 지수로 100이면 보합, 100초과이면 호전, 100미만이면 악화를 나타냄.

다. 신용대출 및 재무여건 취약업체 대출 증가

- 용자사업에서 직접대출의 비중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직접대출 내에서 신용대출 및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하여 향후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직접대출의 중요성 및 활용도가 커짐. 특히, 직접대출 내에서 순수 신용대출 및 재무여건 취약업체에 대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함. 향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
 - 직접대출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대응하여 시행되었으며 신용대출 중심의 직접대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확대됨.
 - 직접대출 비중: 36.3%('05) → 43.8%('06) → 43.1%('07) → 49.2%('08) → 48.7%('09. 7월말)

-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향후 신용대출 채권에 부실이 발생하면 기금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2006~2007년 50% 내외를 보이던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2009년 7월 말 현재 79.3%까지 높아졌음
 - 금융기관 등에서 부실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간접대출과 달리 직접대출은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직접적으로 기금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담보별 지원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대리대출과 달리 직접대출은 2008년부터 부동산 및 보증서 담보가 크게 줄고, 신용 비중이 높아짐

[표 4] 담보별 지원실적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직접대출				대리대출			
		신용	보증서	부동산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계
2006	실적	5,522	2,493	2,478	10,493	1,172	2,057	10,211	13,440
	비중	52.6	23.8	23.6	100.0	8.7	15.3	76.0	100.0
2007	실적	4,937	2,228	3,524	10,689	1,545	1,721	10,847	14,113
	비중	46.2	20.8	33.0	100.0	10.9	12.2	76.9	100.0
2008	실적	7,275	2,602	3,076	12,953	1,427	1,568	10,402	13,397
	비중	56.2	20.1	23.7	100.0	10.7	11.7	77.6	100.0
2009 .7.31 까지	실적	12,597	1,990	1,293	15,880	1,605	2,033	13,100	16,739
	비중	79.3	12.5	8.1	100.0	9.6	12.1	78.3	100.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표 5] 직접대출 재무평가 현황 비교

(단위: 건, 백만원, %)

재무등급	2007				2008				2009년 7월말				
	건수	비율	지원금액	비율	건수	비율	지원금액	비율	건수	비율	지원금액	비율	
F3-이상	1229	56.5	430,462	58.0	1,422	54.0	497,182	56.8	1,560	40.3	391,581	40.1	
F4 + 이 하	F4+	272	12.5	105,657	14.2	311	11.8	98,132	11.2	519	13.4	123,983	12.7
	F4	191	8.8	62,858	8.5	229	8.7	74,248	8.5	535	13.8	128,225	13.1
	F4-	112	5.1	30,317	4.1	137	5.2	47,748	5.5	334	8.6	82,966	8.5
	F5+	297	13.6	90,137	12.1	423	16.1	121,481	13.9	392	10.1	107,105	11.0
	F5	34	1.6	10,744	1.4	49	1.9	15,516	1.8	233	6.0	57,824	5.9
	F5-	39	1.8	10,915	1.5	59	2.2	17,496	2.0	238	6.1	65,702	6.7
	F6	2	0.1	1,321	0.2	5	0.2	2,860	0.3	59	1.5	18,573	1.9
소계	947	43.5	311,949	42.0	1,213	46.0	377,481	43.2	2,310	59.7	584,378	59.9	
합계	2,176	100.0	742,411	100.0	2,635	100.0	874,663	100.0	3,870	100.0	975,959	100.0	

주: 1. 대여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취급하는 직접대출에 대하여만 작성됨.

2.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하여는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있음(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모두 재무 평가를 생략).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특히, 직접대출시 재무평가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별 지원 비중에서 재무여건 취약업체에 대한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이는 재무평가 위주의 기업평가에서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하나, 향후 부실화 가능성은 더 높음
 - 재무여건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F4등급 이하에 대한 지원 비율이 2007~2008년의 40%대에서 2009년 1~7월 중 59.9%로 크게 높아짐

라. 중소기업 신용경색 대비책 마련 필요

- 정부가 2010년 용자사업 규모를 크게 줄일 계획인바, 중소기업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증 및 용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경제상황,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된 사업 규모를 정상화할 계획임
 - 2010년 중소기업청 용자사업 예산안은 3조 1,355억원으로 2009년 5조 8,555억원(본 예산: 4조 2,555억원) 대비 2조 7,200억원(본 예산: 1조 1,200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예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용자사업의 규모가 줄어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줄어들게 되므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기술성·사업성은 있으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시장실패 영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용자 심의 조건, 용자사업 채원 배분, 용자기간 및 금리 조건 등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담당] 이화실 분석관(788-4631)

10 SOC 사업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가. 2009년 상반기 SOC 사업의 재정집행 현황

-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 정부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4대 중점관리 분야 중 SOC 사업의 2009년 상반기 집행실적은 31.1조원으로 계획(26.5조원) 대비 117.4%를 집행하였음
- SOC 사업의 연간 진도율은 72.5%로 일자리사업(71.1%), 민생안전사업(62.4%)보다 높고, 당초 상반기 계획(26.5조원) 대비 4.6조원을 초과 집행함

[표 1] 2009년 상반기 4대 중점관리분야 재정집행 현황

(단위: 조원, %, 누계)

구 분	2009년 계획(A)	2009년 6월말				진도율 (C/A)
		계획(B)	실적(C)	(C-B)	(C/B)	
합 계	74.9	47.8	52.9	5.1	110.7	70.6
■ 일자리사업(206개)	4.5	3.1	3.2	0.1	103.2	71.1
■ 민생안전사업(125개)	23.7	14.4	14.8	0.4	102.8	62.4
■ 금융시장안정사업(9개)	3.8	3.8	3.8	0.0	100.0	100.0
■ SOC사업(1,170개)	42.9	26.5	31.1	4.6	117.4	72.5

주: 예산사업 및 공기업 사업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09. 7.

나. 국토해양부 SOC 사업의 부문별 예산집행 현황

- SOC 사업의 부문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도로부문, 철도부문, 도시철도부문, 수자원부문 등은 당초 계획 대비 101.4~109.7%를 집행하여 대체로 계획을 달성하였으나, 항만부문과 공항부문은 계획대비 각각 97.6%와 93.1%를 집행하여 다소 부진하였음
- 예산 집행부진의 주요 사유는 항만부문의 경우 해상공사의 특성상 동절기 공사추진이 어려워 상반기 집행실적이 타 분야의 SOC 사업에 비하여 다소 저조하였고, 공항부문의 경우 외자장비구매(항행안전설비) 관련 신임장 개설 등이 지연된데 기인한 것임

[표 2] 2009년 상반기 SOC 사업 부문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 예산 (A)	2009년 6월말			'09 예산 대비 (C/A)
		계획 (B)	집행액 (C)	계획대비 (C/B)	
합 계	234,041	152,130	159,588	104.9	68.2
도 로	92,276	55,727	61,120	109.7	66.2
철 도	47,449	31,952	33,067	103.5	69.7
도시철도	15,899	11,268	11,424	101.4	71.9
항 만	21,249	14,166	13,819	97.6	65.0
공 항	591	475	442	93.1	74.8
수자원	23,164	14,732	15,127	102.7	65.3
물류 등 기타	13,151	10,105	10,544	104.3	80.2
지역도시	7,760	5,339	5,278	98.9	68.0
산업단지	8,301	5,454	5,599	102.7	67.4
주 택	2,528	1,688	1,965	116.4	77.7
해양환경	1,672	1,225	1,203	98.2	71.9

주: 2009년도 국토해양부 당초 예산(추경예산 미포함) 중 내부거래, 국고채,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비성 예산 제외.

자료: 국토해양부, 2009. 7.

다. SOC 사업 관련 공기업의 사업비 집행현황

- 국토해양부 산하 SOC 사업 관련 13개 공기업의 상반기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연간 진도율이 67.7%로 컨부두공단(55.6%)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기업이 상반기 집행계획을 초과 집행함
 - 2009년 컨부두공단 전체 사업비 306억원 중 65%인 199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었으나, 6월말 기준 55.6%인 170억원을 집행하여 당초 상반기 계획대비 85.4%에 그침
 - 컨부두공단의 집행부진 사유는 전체사업비의 35.3%가 신규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집행초기 예산 비중이 낮은 설계단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고, 선금 지급률(최대 70% → 지급 40~50%)이 낮은데 기인함

[표 3] 2009년 상반기 국토해양부 산하 13개 공기업의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09년 사업비 (A)	2009년 6월말			'09사업비 대비(C/A)
		계획(B)	집행액 (C)	계획대비 (C/B)	
주택공사	158,112	96,455	102,864	106.6	65.1
토지공사	126,996	77,071	88,956	115.4	70.0
수자원공사	16,810	10,086	14,012	138.9	83.4
도로공사	27,961	12,369	15,720	127.1	56.2
철도공사	11,450	6,924	7,980	115.3	69.7
철도공단	60,987	41,382	42,911	103.7	70.4
인천공항	1,571	949	1,055	111.2	67.2
한국공항	2,048	1,333	1,478	110.9	72.2
부산항만	2,736	1,770	1,913	108.1	69.9
인천항만	1,247	754	775	102.8	62.1
울산항만	162	97	97	100.0	59.9
컨부두공단	306	199	170	85.4	55.6
제주센터	1,708	1,059	1,144	108.0	67.0
합 계	412,094	250,448	279,075	111.4	67.7

자료: 국토해양부, 2009. 7.

2. 주요 쟁점

가.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수혜자 전달

- 정부는 재정집행을 촉진하고 경기진작을 위하여 의무적 선금률을 10%p 확대함
 - 선금 의무지급률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30%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40%로 확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3)
 - 2009. 6월말 총 계약액 49.8조원 중 14.6조원(29.3%) 선금 지급, 2008. 6월말 33.1조원중 4.1조원(12.5%) → 선금지급률 16.8%p 증가(금액기준 356% 증)
 - 선금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종으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은 반드시 지급토록 해야 함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정부는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선금 의무지급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수급업체의 유동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나, 문제는 최종 수혜자가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점임
 - 감사원의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결과(2009.4)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부터 선금을 수령한 344개 사업 중 34%인 117개 사업에서 424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1,106억원의 선금을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하도급업체 자금난 심화요인이 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미지급된 하도급업체에 선금이 지급되도록 원도급업체에 지급을 독려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강화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필요
- 한편, 국가재정운용점검단(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조기집행 현지출장을 통하여 선금지급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일부 시공업체의 경우 선금 신청 시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추가 부담(선금 보증수수료)과 선급금은 회계처리상 부채로 기록되어 재무건전성(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금 수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음
-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 확인과 부도에 대비하기 위해 선금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선금 보증수수료 추가 부담 발생
 - 선금 보증수수료 요율은 보증기관(보험사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차등부과)하는 것이나, 정부는 계약상대자의 수수료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증수수료를 인하 조정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선금의 무지급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긴급입찰제도 활용에 따른 부작용 보완

- 정부는 긴급입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시설공사 발주에서 계약까지의 소요기간을 20~38일로 대폭 단축함(통상적인 발주~계약 소요기간 : 70~90일)

- 긴급입찰제도는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공고기간(50억원 이상 40일, 10~50억원 15일, 10억원 미만 7일)을 5일간만 공고할 수 있는 제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긴급입찰제도 활용으로 입찰공고기간 줄어들면, 불충분한 공고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고 지면 확대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필요

다. 지방비 확보 전 국비교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한 요건으로 지방비 부담능력만을 확인하도록 함(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지방비 확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 함 ('08. 6월 12.6조원 →'09. 6월 19.8조원, 증 7.2조원)
- 국고보조금 교부 후 지자체 세수 부족 등으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량 감소,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방비 확보를 독려하는 방안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담당] 양성선 분석관(788-4629)

11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¹⁷⁾

- 이를 위해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를 대폭 단축
 - 개산계약¹⁸⁾의 범위를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확대적용,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
 - 추경 조기 실시¹⁹⁾, 이월예산 조기배정,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을 사업부서에 위임

-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을 대폭 개선
 -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 도입, 선금지급 하한율 10% 인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한시적 확대, 행정안전부에 비상경제상황실 설치

17)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 및 계약제도 해설」, 2009.1.

18) 개산계약(概算契約)이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가 완성된 부분부터 우선 시공토록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계약방식임.

19) 지방정부는 보통 2~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확정의 시점차이와 연도말 이전재원 배분으로 인한 것임. 보통 지방정부는 전년도 12월 초, 중앙정부는 12월 말에 당초예산이 확정되며, 당초예산액대로 확정된 중앙정부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지방정부별 배분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당해연도 3~4월에 1차 추경이 이루어짐. 또한 연도말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정액 등을 토대로 연말에 2차 추경이 이루어짐.

나. 2009년 상반기 중 조기집행 목표대비 집행률

- 전체적으로 117.5조원 집행되어 당초 조기집행 목표(110조원)대비 집행률은 106.8%수준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는 상반기 중 62조 2,561억원을 집행(상반기 목표 대비 108.0%),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는 상반기 중 55조 2,299억원 집행(상반기 목표 대비 104.4%)

[표 1] 자치단체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현황(2009.7.1현재)

(단위: 억원, %)

	전체 집행			민간대상 실집행		
	목표액	집행액	목표대비 집행률	목표액	집행액	목표대비 집행률
특별·광역시	319,553	343,226	107.4	214,443	212,609	99.1
도	256,952	279,334	108.7	103,981	92,188	88.7
소계	529,032	552,299	104.4	482,872	491,649	101.8
시	286,277	296,419	103.5	253,400	255,024	100.6
군	156,749	165,826	105.8	150,264	155,822	103.7
구	86,005	90,054	104.7	79,209	80,802	102.0
소계	576,504	622,561	108.0	318,424	304,797	95.7
총계	1,100,000	1,174,859	106.8	800,000	796,446	99.6

주: 민간대상 실집행액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계약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집행액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다. 목표대비 집행실적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지역

- 울산지역은 상반기 중 총 2조 1,154억원을 집행(목표 대비 90.1%)하여 조기집행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기지역이 총 21조 4,902억원을 집행(목표대비 97.8%)

- 대부분의 지역이 조기집행 목표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집행하였고, 특히 대전, 부산, 강원지역은 목표대비 집행률이 115%를 넘었음
- 울산과 경기지역은 신규사업으로 인한 계약체결지연이 많아서 집행실적이 목표액 대비 100%를 넘지 못하였음

[표 2] 지역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현황(2009.7.1현재)

(단위: 억원, %)

	조기집행 목 표 액	자금 집행		민간실자금 집행목표액	민간 실자금집행		
		금 액	목표대비 집행률		금 액	목표대비 집행률	
1	울산	23,468	21,154	90.1	19,042	14,605	76.7
2	경기	219,687	214,902	97.8	152,757	140,967	92.3
3	서울	194,437	198,343	102.0	151,609	147,035	97.0
4	충남	60,095	62,439	103.9	43,109	41,563	96.4
5	대구	34,626	37,017	106.9	25,634	25,951	101.2
6	전북	56,875	60,953	107.2	42,164	41,846	99.2
7	전남	77,499	83,590	107.9	55,749	56,306	101.0
8	제주	16,676	18,420	110.5	15,213	15,730	103.4
9	충북	40,430	44,809	110.8	29,436	31,367	106.6
10	경북	79,593	88,788	111.5	58,616	59,666	101.8
11	경남	86,833	96,995	111.7	62,953	64,154	101.9
12	인천	62,544	70,941	113.4	43,899	47,207	107.5
13	광주	20,730	23,641	114.0	13,743	14,594	106.2
14	대전	21,123	24,433	115.7	13,416	14,102	105.1
15	부산	58,764	68,047	115.8	36,257	39,893	110.0
16	강원	52,138	60,387	115.8	37,699	41,458	110.0
합계		1,100,000	1,174,859	106.8	800,000	796,446	99.6

자료: 행정안전부.

2. 조기집행을 위한 차입으로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차입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실조기집행액 64조 744억원 중 6.2%인 3조 9,496억원을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으로 조달
 - 지방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1조 46억원, 은행 등을 통한 일시차입금이 2조 9,450억원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나 여유자금으로 조달할 여력이 없어서 은행 등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3~6개월간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것을 의미
 -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조기집행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단기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부담도 16개 시·도에서 1,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지방채에 대한 향후(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부담이 약 1,000억원,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2009년 내)이 약 680억원
- 이러한 일시차입과 지방채 조기발행은 차입이자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미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표 3] 시·도 본청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차입현황(2009.7.1현재)

(단위: 백만원, %)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위한 차입			이자부담	집행액 대비 차입비율
		집행액 (A)	목표대비 집행률	지방채	일시차입금	소계 (B)		
1	서울	15,619,600	100.9	390,000	500,000	890,000	11,949	5.7
2	부산	6,804,702	115.8	0	205,999	205,999	2,320	3.0
3	대구	2,652,800	108.9	55,500	160,000	215,500	1,200	8.1
4	인천	5,552,600	115.3	99,467	673,900	773,367	5,266	13.9
5	광주	1,807,800	121.2	57,972	105,000	162,972	26,479	9.0
6	대전	1,869,366	121.8	0	314,600	314,600	468	16.8
7	울산	1,482,900	85.0	0	119,000	119,000	143	8.0
8	경기	7,647,100	87.0	0	0	0	0	0.0
9	강원	2,112,400	126.5	0	130,000	130,000	354	6.2
10	충북	2,128,300	111.9	174,300	0	174,300	75,328	8.2
11	충남	2,363,500	114.5	80,000	140,000	220,000	3,460	9.3
12	전북	2,377,100	121.4	21,800	160,000	181,800	8,247	7.6
13	전남	2,948,300	114.3	0	0	0	0	0.0
14	경북	3,084,100	126.6	0	260,000	260,000	4,100	8.4
15	경남	3,781,876	129.0	125,600	130,000	255,600	28,950	6.8
16	제주	1,841,971	110.5	0	46,500	46,500	330	2.5
합계		64,074,415	107.9	1,004,639	2,944,999	3,949,638	168,594	6.2

주: 1. 각 시·도 본청 기준 조기집행액과 차입조달을 나타냄.

2. 이자부담은 지방채의 경우 5년거치 10년 상환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포함한 액수이며, 일시차입금은 3~6개월 가량의 이자를 나타냄.

자료: 16개 시·도 본청 예산담당관실의 자료 취합후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제주, 경기, 전남을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으로 조달

□ 대전광역시가 조기집행액수인 1조 8,694억원의 16.8%인 3,146억원을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을 통해서 조달하였고,

- 인천광역시가 조기집행액 5조 5,526억원의 13.9%인 7,734억원을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을 통해서 조달하였음
-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2조 3,635억원의 9.3%인 2,200억원을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하였고, 광주광역시가 1조 8,078억원의 9.0%인 1,630억원
- 울산광역시의 경우 조기집행 실적행액의 8.0%, 전라북도의 경우 7.6%, 제주특별자치도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일시차입금을 통해서 조달하였음

나. 지방채를 통한 자금조달 급증문제

- 하반기에도 중앙정부 추경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정되어 있고 지방세 수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무 잔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채는 보통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는 바, 최근 들어 지방채무잔액의 급속한 증가는 향후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미래 재정운용을 경직화 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결손, 정부추경에 의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기인한 것이며 재정조기집행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 단기 채무인 일시차입금을 통한 자금조달 급증문제

- 지방정부의 상반기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한 일시차입은 원리금을 하반기 중 단기(3~6개월)내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여유자금이 체때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만큼 하반기 재정지출의 가용자금이 부족할 수 있음
 - 하반기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가용자금을 축소시킬 우려
-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조달 중 일시차입금 등의 단기차입비중이 높은 이유는 지방정부의 가용자금(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임

라. 경기침체와 중앙정부 추경으로 인한 지방정부 가용자금의 감소

-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입결손, 중앙정부 추경안에 의한 교부세 감액,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금 등으로 가용자금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하였음
- 총 6.9조원의 가용자금이 당초 예산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예상징수액: 40.7조원 → 당초 예산 47.1조원에 비해 6.8조원 부족
 - 지방교부세 추경예산: 25.1조원 → 당초 예산 27.3조원에 비해 2.2조원 부족
 - 지자체 국고보조금 추경예산: 30.5조원 → 지방비 부담금 1.7조원 증가
 - 지방비 부담금이 11.4조원에서 13.1조원으로 증가
 - 중앙정부의 지방채 인수: 4.4조원 → 인수규모 3.8조원 증가
 -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채 인수규모가 기존 0.6조원에서 4.4조원으로 증가

- 지방세 예상결손액과 지방교부세 감액 및 지방비부담금 증액은 가용자금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지방채 추가인수는 가용자금을 증가시킴, 전체적으로 가용자금은 2009년 지방정부 당초 예산에 비해서 6.9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가용자금감소분=지방세 예상결손액(6.8조원)+지방교부세 감액(2.2조원)+지방비 부담금 증액(1.7조원)-중앙정부 지방채인수(6.8조원)
- 이러한 결과는 올해 1~2월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을 근거로 추계된 지방세수 감소분 6.8조원이 변함이 없고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지방채가 모두 발행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

[표 4] 지방정부 가용자금의 변화분 추정치

(단위: 조원)

	당초 예산액	변경액	증감
◦지방세수(A)	47.1	40.3	-6.8
◦지방교부세(B)	27.3	25.1	-2.2
◦지자체 국고보조금	26.5	30.5	4.0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금(C)	11.4	13.1	1.7
◦중앙정부 지방채 인수(D)	0.6	4.4	3.8
□ 가용자금(A+B+D-C)	66.0	59.1	-6.9

주: 1. 지방세수 변경액은 올해 2월 말 지방세 징수액을 근거로 계산.

2. 지방교부세와 지자체 국고보조금 변경액은 올해 4월 중앙정부 추경이후 액수임.

3. 지방비부담금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지방비 부담률 30%를 토대로 한 추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9.5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따라서 6.9조원의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 인수 지방채 이외에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과 일시차입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음

마. 지방세수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방세입에 있어서 향후 지방세수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국세 중심의 세수구조(지방세 비율이 20%수준)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추진하는 재정조기집행은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감세조치, 재정조기집행, 추경 등)은 과세자주권과 실질적인 세율결정권이 없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원 결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국세의 감세로 인한 주민세·지방교부세 감소, 중앙정부 추경의 세입경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
- 현재 지방세 비율이 20%수준이고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비율이 38.5%에 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입이 논의 중인 지방소득·소비세 제도설계에 있어서 지방세입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5%는 2.4조원, 10%는 4.8조원 수준이고 그만큼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증가하게 됨
 - 중앙정부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3.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재정집행의 위축우려

가. 하반기 집행예산액의 감소 문제

- 일부 시·도는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하반기 집행예산액이 상반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
-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상반기 집행액은 64조 744억원이었으나 하반기 집행예산액은 37조 3,714억원으로서 2009년 세출예산액 대비 하반기 지출비중이 36.8%수준
 - 올해 초 각 시·도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의 목표를 2009년 세출예산액의 60%수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하반기 지출비중은 40%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일부 시·도의 경우 하반기 집행예산액이 2009년 세출예산액의 30%수준에 못미치고 있음
 - 충청북도 : 상반기 집행액 2조 1,283억원, 하반기 집행예산액 7,413억원, 2009년 세출예산액 대비 하반기 지출비중 25.8%
 - 전라북도 : 상반기 집행액 2조 3,771억원, 하반기 집행예산액 8,547억원, 2009년 세출예산액 대비 하반기 지출비중 26.4%
 - 대전광역시 : 상반기 집행액이 1조 8,694억원, 하반기 집행예산액 6,879억원, 2009년 세출예산액 대비 하반기 지출비중 26.9%

[표 5] 시·도 본청 하반기 집행 예상액

(단위: 백만원, %)

		상반기 집행액	하반기 집행예상액(A)	2009 세출예상액(B)	하반기 지출비중 (A/B)
1	충북	2,128,300	741,300	2,869,600	25.8
2	전북	2,377,100	854,706	3,231,806	26.4
3	대광	1,869,366	687,963	2,557,329	26.9
4	인천	5,552,600	2,439,636	7,992,236	30.5
5	충남	2,363,500	1,077,000	3,440,500	31.3
6	서울	15,619,600	7,794,200	23,413,800	33.3
7	제주	1,841,971	952,425	2,794,396	34.1
8	대구	2,652,800	1,406,100	4,058,900	34.6
9	부산	6,804,702	3,917,618	10,722,320	36.5
10	경남	3,781,876	2,197,580	5,979,456	36.8
11	전남	2,948,300	1,897,000	4,845,300	39.2
12	경북	3,084,100	2,320,126	5,404,226	42.9
13	울산	1,482,900	1,162,300	2,645,200	43.9
14	광주	1,807,800	1,488,575	3,296,375	45.2
15	경기	7,647,100	6,489,983	14,137,083	45.9
16	강원	2,112,400	1,944,901	4,057,301	47.9
합계		64,074,415	37,371,413	101,445,828	36.8

주: 2009 세출예상액은 각 시·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향후 1~2회 추경감안)한 2009년 예산액이며 일종의 하반기 가용자금이라고 할 수 있음.

자료: 16개 시·도 본청 예산담당관실의 자료 취합후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재정지출의 지속성 유지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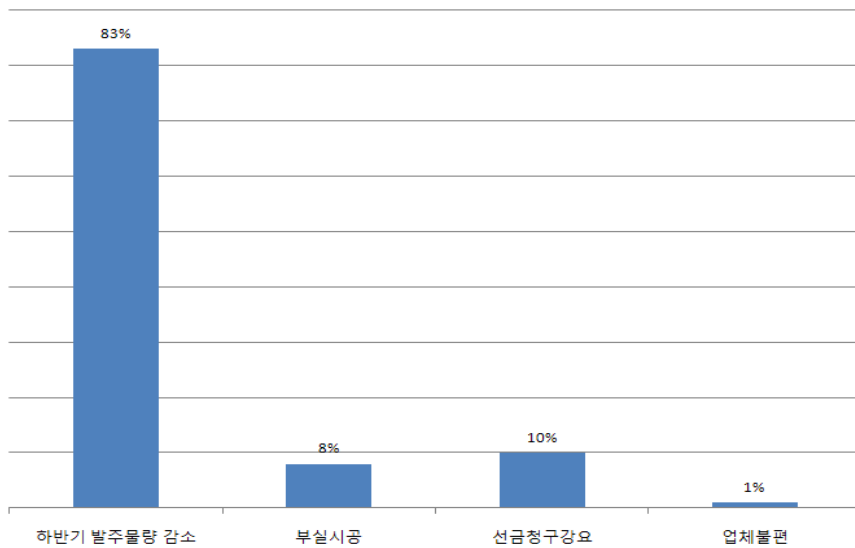
□ 상반기 집중 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재정지출 감소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세 세수여건이 좋지 않고,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채 추가발행과 일시차입금으로 하반기 재정지출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으나 이미 상반기 중에 지방채 추가발행과 일시차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조달 여력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전라북도가 도내 200개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재정조기집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하반기 발주물량 감소”를 지목하고 있음

[그림 1] 조기집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상황



주: 전라북도 소재 일반, 전문 200개 건설업체 설문조사(2009.4.15~4.17)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보고회」, 자료집, 2009.7.20

- 다만,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가 예정되어 있고, 기존 사업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 한다면 하반기에도 재정지출의 지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 지방정부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

- 2009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지방정부 전체적으로 행사·축제·민간이전경비의 예산이 전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7.1% 증가하였고, 특히 행사지원비(31.0%), 민간행사보조(15.7%) 예산의 증가폭이 컸음

[표 6] 2009년도 지자체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현황

(단위: 백만원, %)

		2008	2009	증감	증감율
행사지원비	광역자치단체	70,937	79,080	8,143	11.5
	시	55,168	85,952	30,784	55.8
	군	26,548	35,275	8,727	32.9
	자치구	24,674	24,674	0	0.0
	소계	177,327	232,248	54,921	31.0
행사실비보상금	광역자치단체	26,020	28,538	2,518	9.7
	시	67,938	76,073	8,135	12.0
	군	49,664	57,051	7,387	14.9
	자치구	22,414	25,320	2,906	13.0
	소계	166,036	186,982	20,946	12.6
민간경상보조	광역자치단체	1,539,694	1,681,280	141,586	9.2
	시	2,309,639	2,563,521	253,882	11.0
	군	954,492	1,057,589	103,097	10.8
	자치구	1,523,003	1,447,168	-75,835	-5.0
	소계	6,326,828	6,749,558	422,730	6.7
사회단체경상보조	광역자치단체	33,157	27,304	-5,853	-17.7
	시	85,965	62,486	-23,479	-27.3
	군	52,261	33,120	-19,141	-36.6
	자치구	31,190	30,987	-203	-0.7
	소계	202,573	153,897	-48,676	-24.0
민간행사보조	광역자치단체	100,998	103,318	2,320	2.3
	시	238,423	281,393	42,970	18.0
	군	118,034	142,453	24,419	20.7
	자치구	27,088	33,501	6,413	23.7
	소계	484,543	560,665	76,122	15.7
행사·축제·민간이전비용 총계		7,357,307	7,883,350	526,043	7.1

주: 행사축제성 경비중 '행사관련시설비'는 2009년 각 단체별 예산액이 집계되지 않아서 제외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9.4.

- 지방재정 지출의 지속성과 하반기 재정지출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볼 수 있는 행사·축제 경비,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낭비적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

[담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12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의 급증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1. 현 황

가.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액이 급속하게 증가

- 올해 상반기 동안(2009.1~2009.6)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2조 928억원으로 이미 2008년 지방채 발행규모인 2조 310억원을 넘어섰음

[표 1]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억원)

	2008		2009			
	발행액 (1.1~12.31)	채무잔액 (연도말)	한도액	발행계획액 (2월말 현재)	발행액 (1.1~6.30)	채무잔액 (6월말)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20,310	133,368	37,320	44,092	20,928	145,494

주: 1. 기초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각 시·도 예산담당관실 자료 취합.

- 2009년 7월 31일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의 채무잔액은 14조 5,494억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해서 1조 2,127억원이 증가
- 2006~2008년 3년 동안 채무잔액이 1조 8,637억원 증가한 반면, 올해 7개월(2009.1~2009.7) 동안에만 채무잔액이 1조 2,127억원 증가

- 2006~2008년 3년 평균 채무잔액 증가율 7.8%, 7개월(2009.1~2009.7) 채무잔액 증가율 9.1%

나. 특별·광역시의 지방채 발행액과 지방채무잔액이 도(道)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서울특별시가 7개월 동안 5,524억원, 광주광역시 1,944억원, 경기도 1,727억원, 인천광역시 1,673억원, 경상남도 1,670억원, 대구광역시 1,612억원의 지방채 발행
 -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도시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해당 자치단체 가용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다. 지방채무잔액이 2008년 말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증가

- 상반기 채무상환액은 7,579억원인 반면, 지방채 발행액은 2조 310억원으로 7월말 지방채무잔액이 대폭적으로 증가
 - 특히 특별·광역시의 채무잔액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컸음

[표 2] 시·도 본청 지방채무잔액 및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말 지방채무 잔액			2009			채무잔액 증감 (B-A)
	2006	2007	2008 (A)	지방채발행액 (09.1.1~7.31)	채무상환 (09.1.1~7.31)	지방채무잔액(B) (09.7.31현재)	
서울특별시	1,146,242	1,363,175	1,853,586	552,388	7,741	2,398,233	544,647
광주광역시	886,066	849,159	799,265	194,372	242,798	750,839	-48,426
경기도	1,077,233	1,288,023	1,449,771	172,700	107,878	1,514,593	64,822
인천광역시	1,239,502	1,406,374	1,543,179	167,270	27,100	1,683,349	140,170
경상남도	336,315	369,121	451,130	167,000	20,012	598,118	146,988
대구광역시	1,685,961	1,781,123	1,762,915	161,184	89,257	1,834,842	71,927
부산광역시	2,004,700	2,258,892	2,376,147	146,669	125,880	2,396,936	20,789
대전광역시	570,150	522,843	481,716	93,400	25,602	427,214	-54,502
제주도	646,488	529,821	547,591	91,932	21,294	618,229	70,638
충청남도	88,200	86,300	137,680	86,000	12,610	211,070	73,390
전라남도	128,668	111,292	206,078	74,230	0	280,308	74,230
울산광역시	581,863	540,610	556,510	69,500	28,322	597,688	41,178
충청북도	146,747	177,731	203,782	39,363	10,890	232,255	28,473
강원도	373,366	418,063	407,513	30,000	22,445	415,068	7,555
경상북도	276,300	271,640	218,900	25,000	1,900	242,000	23,100
전라북도	285,275	318,855	341,028	21,800	14,124	348,704	7,676
합계	11,473,076	12,293,022	13,336,791	2,092,808	757,853	14,549,446	1212655

주: 1. 2009년 지방채 발행액은 조기집행을 위한 차입이외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발행한 액수임.

2. 2009년 대전광역시 지방채무 잔액은 도시철도공사 이관 지방채(1,223억원)를 조정한 액수임.

자료: 16개 시·도 본청 예산담당관실의 자료 취합후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 지방정부의 중장기적인 재정경직성 심화 우려

가. 시도 채무잔액 비율

-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의 총계예산대비 채무잔액비율은 16.3%,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대비 지방채 발행액 비율은 3.7%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들의 예산대비 채무잔액비율이 20% 수준을 상회
- 자주재원은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서 일종의 가용자금인 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향후 지자체의 가용자금 부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재정경직성 심화

- 지방채를 통한 자금조달의 급증은 지방정부에게 향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
 - 하반기에도 중앙정부 추경(세입경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되고, 지방세 세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계획액 이상으로 발행하여 지방채 채무잔액은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임
- 지방채는 보통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는 바, 최근 들어 지방채무잔액의 급속한 증가는 향후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미래 재정운용을 경직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3] 시·도 본청 예산대비 채무잔액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2009당초예산	자주재원	2009채무잔액 (7.31현재)	지방채발행액	예산대비 채무잔액비율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발행액 비율
대구광역시	4,752,800	3,232,536	1,834,842	161,184	38.6	5.0
부산광역시	7,165,367	4,595,327	2,396,936	146,669	33.5	3.2
광주광역시	2,713,517	1,902,178	750,839	194,372	27.7	10.2
대전광역시	2,515,393	1,782,224	671,814	215,700	26.7	12.1
인천광역시	6,558,253	4,990,967	1,683,349	167,270	25.7	3.4
울산광역시	2,595,795	2,014,963	597,688	69,500	23.0	3.4
제주도	2,696,185	1,699,055	618,229	91,932	22.9	5.4
강원도	3,069,005	1,358,031	415,068	30,000	13.5	2.2
경기도	13,019,827	8,938,152	1,514,593	172,700	11.6	1.9
서울특별시	21,036,900	18,897,751	2,398,233	552,388	11.4	2.9
경상남도	5,672,214	2,792,910	598,118	167,000	10.5	6.0
전라북도	3,574,724	1,499,538	348,704	21,800	9.8	1.5
충청북도	2,594,889	1,225,579	232,255	39,363	9.0	3.2
전라남도	4,624,312	1,614,641	280,308	74,230	6.1	4.6
충청남도	3,850,480	1,800,887	211,070	86,000	5.5	4.8
경상북도	4,576,610	1,972,949	242,000	25,000	5.3	1.3
합계	91,016,271	60,317,688	14,794,046	2,215,108	16.3	3.7

주: 1. 자주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임.

2. 2009년 대전광역시 지방채무 잔액은 도시철도공사 이관 지방채(1,223억원)를 조정한 액수임.

자료: 16개 시·도 본청 예산담당관실의 자료 취합후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다. 과도한 지방채의 발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파산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

-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그 발행총액의 한도를 중앙정부에서 제한하고 있고, 한도를 넘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 또한 각 지자체 재정부족액의 약 88%를 보전해 주고 있는 보통교부세 제도로 인해서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재정부족액을 굳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려는 유인이 없었다는 점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파산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음

라. 지방정부의 채무와 이자 상환부담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외적인 경제위기와 세계개편안 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재정환경이 변하게 되고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지방정부의 채무와 이자상환부담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올해 국세 세입결손과 세계개편안 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9년 국세세입결손 11.2조원에 따라 내국세의 법정률로 결정되는 지방교부세 세입이 약 2.2조원 감액, 또한 소득세, 법인세 할 주민세 수입도 약 10% 가량 감액될 예정

[담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집필진

■ 총괄 · 기획

예산분석실장 김호성

예산분석심의관 박인화

예산분석실 천우정 팀장, 송병철 팀장, 조영철 팀장, 강상규 팀장대리

■ 세부 집필

- | | |
|-----------------------------------|---------|
| 1. 총괄 및 요약 | 오세일 분석관 |
| 2. 2009년도 조기집행 이행실태 분석 | 오세일 분석관 |
| 3. 상반기 이·전용감액 실태 분석 | 부길환 분석관 |
| 4. 국고금 및 일시차입금의 운용실태 분석 | 황선호 분석관 |
| 5.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재정운용 점검 | 한정수 분석관 |
| 6. 실업급여비 지출 현황과 문제점 | 이진우 분석관 |
| 7. 희망근로사업 집행실태 분석 | 오세일 분석관 |
| 8. 중소기업 신용보증 현황 및 정책방향 | 유인규 분석관 |
| 9.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집행동향 및 문제점 | 이화실 분석관 |
| 10. SOC 사업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 양성선 분석관 |
| 11.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및 문제점 | 김경수 분석관 |
| 12.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의 급증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김경수 분석관 |

■ 행정지원 · 편집

행정예산분석팀 엄상미

2009년 예산정책보고서 발간 현황 목록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사회예산분석팀	2009. 2. 26
2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박인화 김봉주 서세욱 조혜정	2009. 4. 21
3	재정법률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2009. 6. 10
4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이화실 유인규 정상훈 전승훈 이진우 윤성식	2009. 9. 22
5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검토	예산분석실	2009. 9. 23

[예산정책보고서 제6호]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발 간 일 2009년 10월 5일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3772

인 쇄 처 디자인 여백(02·2672·1535)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 분석팀(TEL 02·788·377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37-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